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조선 성종대 '領敦寧以上'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김 원 혁

조선 성종대 '領敦寧以上'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지도교수 오 수 창

이 논문을 문학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 사 학 과

김 원 혁

김원혁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7년 11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국문초록】

조선 성종대 ‘領敦寧以上’집단의 성립과 정치활동

김원혁

본 논문은 조선 성종친정기 소수 대신집단인 ‘領敦寧以上’집단의 성립과 그들의 정치활동을 통해 성종대 중앙정계의 동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성종대는 대간의 성장이 두드러진 시기로 평가받는데, 특히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고 왕권강화를 위해 대신들을 견제하려고 대간을 優容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나 실제 성종친정 초기부터 대간과 갈등하였고 특별히 대신을 견제하거나 반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성종대 정치사를 파악하기 위해 그동안 간과되었던 대신집단의 정치동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종친정기 정국운영의 핵심을 담당한 집단은 대신들 중에서도 영돈녕이상 집단이었다. 이들은 府院君과 三政丞 · 領中樞府事 · 領敦寧府事로 구성된 정1품 이상의 고위관료집단으로 功臣과 外戚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들은 집단 내부에서 부원군과 실직을 오가며 집단을 유지했다. 이들은 收議참여, 領經筵事 독점, 兼판서 역임 등과 같은 院相의 정치참여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는 원상들이 행했던 소수대신집단의 정치참여가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영돈녕이상의 구성원은 외척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성종 즉위 초 幼主인 성종을 대신하여 貞熹王后의 垂簾聽政으로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세조대 폐지되었던 외척예우기관인 敦寧府가 復設된다. 외척들은 돈녕부를 통해 無職司 관직에 나아갔고, 이를 발판삼아 문 · 무직을 겸직하거나 轉職하여 실직으로 나아갔다. 이후《經國大典》에는 國舅를 領敦寧府

事로 삼는 규정이 생기면서 왕비가문의 위상은 보다 높아지게 되었다.

한편 성종 즉위 초부터 대간들은 경연을 통해 발언기회를 늘려나갔고 대신들을 탄핵하면서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성종 역시 철저한 유교교육을 받으며 納諫의 태도를 견지하며 이들을 우대하였다. 그러나 대간의 간언이 빈번해지면서 왕의 사소한 행위까지도 간섭하게 되었다.성종 9년에는 대간붕당조성사건이 발각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성종은 대간을 불신하고 이들과 갈등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간을 견제하면서 왕권을 보위할 수 있는 원상출신 대신들은 성종 10년을 전후로 대부분이 사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은 대간세력 자체를 줄이거나 새로운 정치집단을 구성해야했다. 성종은 후자의 방법을 택하면서 대신집단을 영돈녕이상으로 재편하였다.

영돈녕이상의 정치참여 방식은 기존 원상들이 행하던 收議를 통한 중대사 논의 · 領經筵事로서 경연주재 · 兼判書로서 판서직 겸무 등이었다. 영돈녕이상 收議는 많은 중대사를 결정하기도 하였지만, 성종은 수의결과를 대간의 공박에 대한 반박근거로 이용하기도 했다. 또 영경연사로 경연에 참여하면서 대간들의 발언에 대한 성종의 자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서 성종 보위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간들은 영돈녕이상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한다. 특히 尹壕와 尹弼商은 시임정승에서 체임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역할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들은 여전히 수의에 참여하고 영경연사직을 유지하면서 기존 영돈녕이상의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이처럼 성종은 영돈녕이상을 優容하였고 이들은 외척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대는 곧 외척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대간들은 영돈녕이상을 비롯한 외척들의 정치참여를 맹렬히 비판한다. 특히 성종 말엽인 20~25년 사이 외척에 대한 탄핵은 높은 빈도와 강도를 보인다. 그러나 성종은 이러한 대간의 공박에 대해 公論을 자임하면서 까지 외척들을 보호하였다.

성종은 임종직전 영돈녕이상을 불러 원상으로서 세자를 보필할 것을 부탁한다. 이는 세조가 예종을 보위하고자 근신들에게 부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공신이자 외척집단인 영돈녕이상에게 세자의 보위집단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들은 고령이었기 때문에 연산군 즉위를 전후로 하여 많은 인물들이 사망하지만 그들과 관련된 친인척들은 꾸준히

정치에 참여하면서 연산군을 보필하였다. 외척대신의 정치참여는 중종이후로도 이어지고 있었고, 중종 이후 발호하였던 외척대신들의 가계 역시 영돈녕이상에 근원을 두고 있었던 점에서 영돈녕이상의 정치참여를 인종·명종시기 척신 정치의 단초로 볼 수 있다.

주요어 : 領敦寧以上, 敦寧府, 成宗, 院相, 대신, 收議, 領經筵事, 兼判書, 외척

학 번 : 2015-20069

목 차

머리말 ····· 1

一. 領敦寧以上집단의 등장배경

1. 垂簾聽政과 院相制 운영 ····· 9

2. 敦寧府 復設과 外戚의 정치참여 ····· 17

3. 성종친정 초기 臺諫 제어의 필요성 ····· 23

二. 領敦寧以上집단과 그 정치활동

1. 領敦寧以上의 구성 ····· 32

2. 領敦寧以上의 정치활동 ····· 36

3. 성종대 권력구조와 領敦寧以上 優容 ····· 47

맺음말 ····· 53

참고문헌 ····· 57

Abstract ····· 61

표 목 차

〈표 1〉 세조 傳位時 輪番 大臣의인적사항 ····· 14

〈표 2〉 貞熹王后 垂簾聽政 시기의 敦寧府 관원 임용형태 ····· 21

〈표 3〉 領敦寧以上의 인적사항 ····· 33

〈표 4〉 성종대 領敦寧以上 收議의 분석 ····· 39

〈표 4〉 領敦寧以上의 收議 사안별 내용 ····· 42

머리말

조선 성종대는 《經國大典》의 개수 및 반포로 대표되는 체제성립시기일 뿐만 아니라 역사서 · 의례서 · 문학서 · 지리서와 같은 서적들이 편찬되는 등 조선의 제도적 기틀이 다져진 시기였다.[1] 또한 이 시기에는 公論 혹은 公議를 기반으로 한 臺諫의 활발한 정치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2] 삼사로 대표되는 언관은 언로의 확대를 통해 권신화된 대신세력을 견제하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나아가 왕과 대신이 독점하던 정국운영 체제에서 정치의 한 축을 담당함으로써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3]

성종대는 크게 貞熹王后 垂簾聽政期와 成宗親政期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시기구분은 국정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왕과 정국운영의 주체로 활동하는 제집단의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 성종은 예종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지만 즉위 당시 冠禮도 치르지 않은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정국은 종실을 대표하는 大妃 정희왕후와 院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는데, 이 시기를 수렴청정기라고 하며 성종 즉위년부터 동왕 7년까지 이어졌다. 이후 성종이 장성함에 따라 대비의 撤簾 · 院相制의 폐지가 이어지면서 성종이 본격적으로 정국에 참여하였다. 이 시기에는 臺諫의 言論활동 증가와 弘文館의 言官化 등 언론기관의 성장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는데, 이는 士林세력의 중앙정계 진출과 짝하여 그들의 정치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4]

조선정치사에 있어 성종대는 사림세력이 중앙정계로 진출하는 始點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찍이 申奭鎬는 성종대를 金宗直일파 중심의 신진사류들이 중앙정계로 진출한 시기로 이해하

1) 한충희, 2013〈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136~143쪽.
2) 宋雄燮, 2011〈조선 전기 公論政治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김범, 2011〈조선시대 사림세력 형성의 역사적 배경〉《국학연구》19, 한국국학진흥원, 26~30쪽.
4) 崔異敦, 1994《朝鮮中期 士林政治構造硏究》, 一潮閣.

였다. 특히 이들이 대간과 홍문관의 요직에 있으면서 중앙귀족과 오래도록 항쟁한 결과 士禍가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5] 이후 이 시기 신진사류들이 하나의 정치세력을 의미하는 사림파로 규정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깊이를 더해갔다. 李泰鎭은 성종대 留鄕所복립운동에 주목하면서 사림의 기원을 고려 말 지방 鄕吏層으로 보고, 이들의 中小 在地地主로서의 성격과 性理學적 소양에 주목하였다. 이와 함께 농업기술의 발전, 수리시설 개발 등을 통해 집약적 농업이 발달하였고, 이에 대해 사림파가 성리학을 수용하는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하였다.[6] 李樹健은 영남사림에 대한 연구에서 이 시기 신진사류에 대해 김종직을 비롯한 영남지방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보았고, 이들을 勳舊派와 대칭적인 존재로 규정하였다.[7] 李秉烋는 성종 중기부터 사림의 중앙정계 진출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이들이 영남과 기호지방 사림의 상보적 결합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이 시기 사림세력은 훈구세력과 비교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성종이 사림파를 기용한 이유를 훈구 일변도의 정치체제를 지양하고 상호견제를 통해 정치세력간의 균형을 이루어 왕권안정화를 꾀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8]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사림의 특성과 구조를 여러 방면에서 파악하여 사림의 정체성과 사림정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특히 이러한 연구들은 당파성론과 같은 조선정치사에 대한 부정적 이해와 대비되는 붕당정치의 출현과 그 주체로서 사림의 역할을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9]

한편 성종대 사림의 중앙정계진출과 관련하여, 이 시기의 정치세력에

---

5) 申奭鎬, 1944〈朝鮮 成宗時代의 新舊對立〉《近代朝鮮史硏究》朝鮮總督府.(1996《申奭鎬全集》上, 신서원 재수록)

6) 李泰鎭, 1972·1973〈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 -朝鮮初期 性理學 定着의 社會的 背景-(上·下)〉《震檀學報》34·35, 震檀學會(1986《朝鮮社會史硏究》, 지식산업사 재수록) ; 1981,〈15·16세기 新儒學 정착의 社會經濟的 배경〉《奎章閣》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1989《朝鮮儒敎社會史論》지식산업사 재수록) ; 1985《朝鮮後期의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7) 李樹健, 1979《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8) 李秉烋, 1984《朝鮮前期 畿湖士林派硏究》, 一潮閣; 1999《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一潮閣.

9) 李泰鎭, 1987〈黨派性論 批判〉《한국사시민강좌》1, 일조각.

대해 대신을 중심으로 한 훈구세력과 언관을 중심으로 한 사림세력으로 이분하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 연구들이 있다. 먼저 와그너는 사림의 용례검토와 賢良科 출신 및 己卯士林의 가문 · 거주지 등을 분석하여 사림과 훈구의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조선 초기 지배층은 동질적 성격을 띠었다고 보았다.[10] 鄭杜熙는 성종대 대간의 출신배경에 대한 연구에서 이전 시기 요직을 배출했던 소수의 가문이 대간의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훈구와 사림을 별개의 사회계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11] 金範은 이러한 관점에서 훈구와 사림을 이분하기보다는 각 직임이 맡은 고유의 임무와 부여된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원상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 원상의 후손들이 사림으로 칭해졌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와그너와 정두희의 견해를 받아들여 훈구와 사림의 이분법적 이해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그는 훈구와 사림이라는 구도가 아닌, 왕 · 대신 · 언론이라는 구도를 설정하였고 언론기관의 역할증대로 성종치세 중반 왕 · 대신 · 언론이 균형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았다.[12] 宋雄燮은 己卯士林의 출신배경과 거주지를 분석하여 훈구와 사림을 별개의 세력으로 구분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공론에 입각한 언론활동의 증가를 성종대의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성종대는 왕과 소수 공신세력의 사적 권력이 축소되고, 공적 국정운영의 추구가 강화되었던 시기로 보았다.[13] 이러한 연구들은 훈구와 사림을 대립적으로 이해하는 연구들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사실들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으로, 이 시기 정치상을 다각적으로 살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14] 특히 김범과 송웅섭은

---

10) Edward W. wager, 1980〈李組 士林問題에 관한 再檢討〉《全北史學》4, 全北史學會.

11) 鄭杜熙, 1994《朝鮮時代의 臺諫硏究》, 一潮閣; 2000〈朝鮮前期史 硏究의 爭點〉《西江人文論叢》13,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12) 金範, 1999〈조선전기 院相 家門의 변천과 그 의미 - 勳舊勢力 파악의 한 사례연구 -〉 《史叢》49, 고대사학회; 2003〈조선전기 '훈구 · 사림세력' 연구의 재검토〉《韓國史學報》15, 고려사학회; 2005〈조선전기의 왕권과 정국운영: 성종·연산군·중종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2007《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13) 宋雄燮, 2001〈中宗代 己卯士林의 構成과 出身背景〉《韓國史論》4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2011〈조선 전기 公論政治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성종대 언론활동의 증가를 사림의 정치참여 증가로 등치시키는 것이 아니라 각각 정치세력의 구도와 운영원리를 중심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성종대 정치사연구의 특징은 먼저 대간과 삼사로 대표되는 언론기관 연구에 깊이 천착하였다는 것이다.[15] 사림과 언관을 등치시킨 연구와 그렇지 않은 연구 모두 이 시기 언론기관의 정치참여 확대에 주목하고 이러한 현상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세조대의 전제적 정치운영과 상반되는 정치형태로서 언관의 정치참여 증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또 다른 특징은 성종대를 성종친정기와 친정 이전시기로 나누어 대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종친정 이전시기는 정희왕후와 원상주도시기로 보고 외척과 대신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시기로 설명한다. 반대로 성종친정기는 언론기관의 정치력이 증대되고 대신이나 외척들의 영향력은 현격히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성종대 정치사를 언관 중심으로 이해하는 연구경향은 그 이외의 집단들의 정치적 동향을 간과하게 하는 문제를 낳았다. 분명 성종대는 언론의 빈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그 영향력이 이전 시기에 비해 크게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시기 언관을 사림으로 보는 연구들은 조선후기 붕당정치의 주체가 되는 사림의 대척세력으로 훈구대신을 상정하고, 이들로부터 야기된 폐단을 극복하는 과정에 주목하였다. 훈구 · 사림으로 이 시기 정치세력을 양분하지 않는 연구에서도 언관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김범은 왕 · 대신 · 언론이라는 세 세력을 축으로 鼎立구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지만, 그 역시 언론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설명하였던 반면 친정시기 이전의 주도세력과 그들의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

---

14) 그 밖에 훈구와 사림의 용례 검토를 통해 양자 간의 명확한 구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규명한 연구로 이희환, 2005〈조선 전기 사대부, 사류, 살미의 용례〉《역사학연구》24, 호남사학회(2015《조선정치사》, 혜안 재수록) ; 金範, 2006〈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勳舊'의 用例와 그 분석〉《東方學志》179,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등이 있다.

15) 앞서 언급했던 연구 외에도 성종대 언론에 관한 다수의 연구들이 있으며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南智大, 1985〈朝鮮 成宗代의 臺諫 言論〉《韓國史論》1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 崔承熙, 1989《朝鮮初期 言官·言論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朝鮮初期 言論史硏究》, 지식산업사 ; 崔異敦, 1994《朝鮮中期 士林政治構造硏究》, 一潮閣.

으로 살피지 않았다. 송웅섭의 연구는 성종대 전체를 다루고 있는 만큼, 친정 이전시기와 친정기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럼에도 공론에 입각한 공적 정치운영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시기 공신세력이나 외척세력들에 대한 설명은 소략하다. 최근에는 성종대 훈구와 사림의 이분법적 구분에 대한 의문에서 나아가 혈연 · 학문 · 지연 · 관직 등으로 이 시기 정치집단의 재생산이 가능한 구조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6]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세력에 대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림이나 대간연구뿐만 아니라 이 시기 정국운영에 중추로 참여한 대신세력의 동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성종대 대신은 2품 이상의 관원들을 일반적으로 지칭하였는데, 간혹 都承旨나 參議와 같은 당상관을 칭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그 범위가 상당히 넓었다.[17] 뿐만 아니라 세조대부터 성종대까지 靖難 · 佐翼 · 翊戴 · 敵愾 · 佐理로 이어지는 공신책봉은 많은 공신을 양산하였고, 이들에 대해 封君과 加資를 행한 결과 대신의 범위는 크게 확장되었다.[18] 공신들은 시임관료로 실직을 받고 정치에 참여하거나 府院君 · 君 등의 원임관료로 정국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대신의 범주에는 여러 성격의 집단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러한 집단들이 모두 정치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

16) 송웅섭, 2017〈고려 말~조선 전기 '정치 세력의 이해'다시 보기〉《역사비평》120, 역사비평사.

17) 성종대 대신으로 칭해졌던 관료군의 경우 원상, 의정부 참찬이상, 판서, 참판, 관찰사, 절도사 등으로 2품 이상의 관직을 가지고 있었다. 원상, 의정부 참찬이상과 판서들의 경우 대신회의에 일반적인 구성원이었는데 참판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觀察使 鄭垠, 節度使 河叔溥에 사례에서도 이들을 대신으로 칭하고 있다. (《成宗實錄》권6, 成宗 1년 6월 24일 辛未條 ;《成宗實錄》권98, 成宗 9년 11월 15일 壬申條 ;《成宗實錄》권76, 成宗 8년 2월 25일 甲午條.) 간혹 2품 이하의 당상관에 대해서도 대신이라고 칭하였는데, 通政大夫 都承旨 金礎의 사례나 대신회의에 六曹參議가 참석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하지만 당시 기록에서 대신과 당상관이 병렬적으로 서술된 경우가 대다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었다.(《成宗實錄》권87, 成宗 8년 12월 17일 庚戌條 ;《成宗實錄》권103, 成宗 10년 4월 17일 癸卯條.) 이는 조선 건국초 당상관을 대신으로 빈번히 칭했던 것에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8) 세조~성종대 공신에 관한 연구로는 鄭杜熙, 1981〈朝鮮 世祖 - 成宗朝의 功臣硏究〉《震檀學報》51, 震檀學會(1983《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硏究》, 一潮閣에 재수록), 崔楨鏞, 2000《朝鮮朝 世祖의 國政運營》, 신서원 등이 있다.

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중에서도 성종대 정국운영의 핵심을 담당하였던 집단과 그들의 정치행위를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존연구들이 성종친정 이전시기와 성종친정 시기를 구분하고 두 시기를 대비적으로 파악하였던 것도 대신과 대비되는 대간연구에 집중한 결과이다. 이들 연구에서 성종친정 이전 시기는 院相으로 대표되는 소수 대신들에 의해 정국이 주도되었고, 친정 이후에는 대간의 활발한 언론활동으로 대신들의 권위가 현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고 원상제가 폐지되었던 것을 성종의 대신견제로 여겼으며 이어지는 대간들의 대신탄핵에 대해 성종이 윤허함으로써 대신들의 입지가 줄어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종이 대간을 육성하여 대신을 견제한 것인지에 대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대신들은 성종치세 말엽까지 성종과 함께 중앙정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연산군대 정국운영을 주도하면서 무오사화를 일으킬 만큼 정치적 입지가 강고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간에 대한 성종의 불신은 성종 친정초기부터 나타나고 성종과 대간의 갈등은 성종치세 말년까지 유지되었다. 대간의 언론활동 빈도 역시 성종대 전체와 이전시기의 차이가 현격한 것이지 성종친정 이전시기와 성종친정 시기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19] 이는 성종친정 이전시기와 성종친정기를 대비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성종친정기의 정국운영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성종친정기에 활약하였던 영돈녕이상집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領敦寧以上은 종친부를 제외한 각 관서의 정1품 대신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성종과 공신이나 혈연으로 맺어진 소수의 대신집단이었다. 이들은 收議를 통해 국가 중대사를 논하고 경연에 참가하면서 정국운영의 중추를 담당하였다. 성종대 정국운영은 이전시기인 세조대 국왕과 공신위주의 폐쇄적이고 파행적으로 행해졌던 정국운영과 대비된다. 비록 성종이 어린나이로 즉위하여 정희왕후의 수렴청정기를 거치면서 세조대 공신집단인 원상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지만, 세조시기 폐지되었던 제도들을 복구하고 경연과 같은 제도들을 통해 다양한 관료층이 정국운영에 참여하면서 정치참여층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20] 특히 세조

19) 송웅섭, 2011 앞 논문, 105~107쪽.

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언론기관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성종 역시 즉위초부터 철저한 유교 교육을 받으며 유교적 성군을 지향하였고, 그에 따라 대간의 간언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고 대간의 언론활동은 국정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국왕의 권력행사를 제약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돈녕이상집단은 성종 11년 처음 사료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院相 출신 鄭昌孫 · 韓明澮 · 尹士昕과 曾經政丞 沈澮 등의 원임대신, 三政丞 · 領中樞府事 · 領敦寧府事와 같은 시임대신 尹弼商 · 洪應 · 盧思愼 · 李克培 · 尹壕 · 許琮 · 許琮 · 愼承善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은 성종 7년 원상제 폐지 이후 원상의 대부분이 사망한 가운데, 생존해 있던 소수의 원상과 성종 즉위초 책봉되었던 佐理功臣, 外戚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대간언론이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승지들의 다툼과 대간의 붕당조성사건으로 성종이 대간을 불신하면서 등장했다. 영돈녕이상집단의 등장은 이전시기 소수대신 위주의 정국운영, 즉 원상제의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후 이들은 성종 재위기간동안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활약하면서 정국을 주도하였고 연산군대 원상으로 활약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과 정치활동을 분석하면 성종친정기 정국운영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영돈녕이상집단에 대한 연구로는 최승희의 연구와 한춘순의 연구가 있다.[21] 최승희는 성종대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성종중반 언론의 위세가 강해지고 성종 14년 정희왕후의 승하 등과 같은 왕실 내부의 불안한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신과 외척들로 이루어진 왕권보위 집단으로서 영돈녕이상집단을 파악하였다. 한춘순은 영돈녕이상을 성종의 자문집단으로 파악하였고, 6조직계제 하에서 성종의 정치력이 강해짐에 따라

---

20) 김돈은 붕당정치 혹은 사림정치의 성격에 대해 정치세력 · 정치집단이 정치운영의 틀 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를 기반으로 정치 참여층이 확대되는 시기로 규정하였다.(김돈, 《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39쪽.) 성종대는 정치 참여층이 확대되고 있었지만 대간 혹은 사림이라고 하는 정치세력이 정치운영의 틀에 완연히 자리 잡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21) 崔承熙, 2001〈成宗朝의 國政運營體制와 王權〉《朝鮮史硏究》10, 朝鮮史硏究會 ; 한춘순, 2003〈朝鮮 成宗의 六曹直啓制 運用과 承政院 - 親政期를 중심으로〉《韓國史硏究》122, 韓國史硏究會.

대신집단의 권력이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상징한다고 하였다. 특히 성종친정기 영돈녕이상의 자문을 그대로 따라서 시행한 경우가 전체의 27.7%로 그들의 정치적 비중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영돈녕이상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이들의 역할과 정치활동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돈녕이상은 收議와 경연이라는 성종대 정국운영의 대표적인 방식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였고, 그 영향력은 다른 어떤 관료집단보다 강력하였다. 특히 한춘순은 영돈녕이상의 收議에서 '그대로 따른 비율이 적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지만, 영돈녕이상과 성종이 함께 회의하여 영돈녕이상의 의견이 관철된 사안들은 집계하지 않았다. 또 논의되었던 사안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그대로 따른 횟수'를 수치화시켜 영돈녕이상의 정치적 영향력을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영돈녕이상과 관련된 사실관계 · 구성원 · 정치참여 방식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아야하며, 그들의 정치활동이 가지는 역사적 함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1장에서는 영돈녕이상집단의 등장배경에 대해 원상제 · 돈녕부의 복설 · 대간제어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영돈녕이상의 등장배경으로 우선 원상제를 살펴봄으로써 '소수 대신집단'의 정치참여라는 정치적 배경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또 이들은 외척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기 외척의 동향에 대해 돈녕부의 복설을 중심으로 이들의 사회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성종이 대간제어의 필요성을 자각하면서 정국운영을 새롭게 모색해야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서술하도록 하겠다. 2장에서는 성종친정기 영돈녕이상집단의 형성과 그 구성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이들의 영향력 증가와 정치활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규명하도록 하겠다.

Ⅱ. '領敦寧以上'집단의 등장배경

1. 垂簾聽政과 院相制 운영

領敦寧以上집단은 성종친정기의 노성한 소수 대신집단으로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정치에 참여했다.[22] 성종친정 이전에도 이러한 성격의 대신집단이 존재하였는데 그 집단은 바로 세조대의 院相이다. 원상은 세조 말엽부터 성종친정 이전까지 정국을 주도하였던 유력대신집단으로, '공신 출신 노성대신'이라는 측면에서 '영돈녕이상'과 매우 유사하다. 뿐만 아니라 원상과 영돈녕이상은 다른 신료들과 달리 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원상은 세조대부터 성종대까지 중첩적인 공신책봉을 받은 세력이었고, 영돈녕이상 역시 성종초기 책봉되었던 佐理功臣이자 외척으로 왕과 연결되어 있었다. 한편 원상들 중 노령으로 인해 사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인물들은 영돈녕이상의 구성원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원상의 정치참여방식을 답습하는데, 이는 소수의 대신정치체가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돈녕이상과 원상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돈녕이상을 살펴보기에 앞서 원상의 특성과 정치참여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성종은 예종의 갑작스러운 승하로 인해 13세의 어린나이로 즉위하였는데, 단종이 12세로 왕위에 올랐던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성종은 국왕으로서 서무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지나치게 어렸다. 더구나 그는 潛邸에 있으면서 세자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 자칫하면 癸酉靖難

22) 성종대 시기구분은 남지대와 김범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남지대는 성종대를 네시기로 구분하였는데, 정희왕후 수렴청정기간인 성종 원년 ~ 6년, 친정부터 정희왕후 사망하는 동왕 7년 ~ 13년, 그로부터 홍문관의 탄핵으로 대간이 모두 체직되는 14년 ~ 20년, 그리고 나머지 시기인 21년 ~ 25년으로의 구분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김범은 세시기로 성종대를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제 1기로 수렴청정이 끝나고 원상제가 혁파되는 시기인 성종 즉위년 ~ 성종 7년, 성종의 친정시작과 성종의 왕권확립 및 권력재편 시기인 성종 8년 ~ 성종 17년, 홍문관의 언관화 이후 시기인 성종 18년 ~ 25년으로 구분하였다.(김범, 2005 앞 논문, 22~23쪽 참조.)

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성종을 보위할 강력한 세력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유주인 성종을 대신하여 국정운영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貞熹王后와 院相으로 대표되는 소수의 대신집단이 성종 즉위초 정국을 주도하게 되었다.

정희왕후는 예종의 승하 직후 예종의 후사결정부터 兼판서의 임명과 號牌法 폐지 등 국정 전반을 직접 결정하였다. 물론 모든 정무를 정희왕후가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龜城君 李浚과 같은 종친세력 역시 왕실에 큰 부담이 되었다. 그리하여 원상집단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정국이 운영되었던 것이다.[23]

> 宣政殿에 나아가 비로소 政事를 보았다. 承政院 등이 일을 계달하면 주상이 직접 결재하기도 하고 院相들과 의논하기도 하였으며 大王大妃께 글을 올리게 하기도 했다. 정사를 보는 것이 끝나면 승지가 계달된 일을 다시 대왕대비께 품의하여 시행하였다. 이후에도 이와 같이 하였다.[24]

위의 기사는 수렴청정 시기 정국운영의 기본적인 형태를 잘 보여준다. 정희왕후는 예종의 薨逝 직후 혼란한 정국 속에서 왕의 대행자로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지만, 성종이 엄연히 왕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직접 조회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절차상 성종을 중심으로 정무가 이루어졌는데 간단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성종이 직접 결정하고 혼자 결정하기 힘든 사안들은 원상들과 합의 하에 결정하였으며 그래도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희왕후가 정치에 참여하는 형태였다. 또 모든 정무가 대왕대비에게 진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대왕대비가 정무에 참여할 때는 傳敎 · 傳旨 · 懿旨를 통해 국정을 지시하였다.

수렴청정기의 실록기록에서는 전교나 전지의 형태로 국정이 결정되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 주체가 대비인지 성종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성종

---

23) 대비인 정희왕후는 관료로서의 경험이 없었고 정무를 보는 것에도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사안들 중 직접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원상과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일례로 정희왕후는 상소가 올라온 것에 대해 다시 의논할 사안에 대해서는 동그라미를 쳐서 원상에게 하달하였다. (《成宗實錄》 권3, 成宗 1년 2월 22일 辛未條.)

24) 《成宗實錄》 권4, 成宗 1년 3월 3일 壬午條, "御宣政殿, 始視事. 承旨等啓事, 上親決之, 或議諸院相, 或命啓于大王大妃. 視事罷, 承旨以所啓事, 更稟大王大妃施行, 後倣此."

이 스스로 밝히듯이 모든 施措를 대비로부터 지시 받았다고 할 만큼 성종 즉위초 정희왕후의 영향력은 상당했다.[25] 즉위 초 성종이 직접 행했던 업무로는 왕이 반드시 참석해야했던 의례적인 것들이 많았는데, 가령 예종의 장례관련 업무나 왕실제사 · 왕실 誕日행사 · 사신접대와 관련된 업무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후 성종이 장성해 감에 따라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특정 업무를 보는 빈도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수렴청정기 말엽까지 신료들과 일치하지 않는 사안들이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정희왕후에게 품지를 올려 상의하여 결정하였다.[26] 정희왕후는 성종 3년 무렵부터 직접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성종이 신료들과 국정을 논의하면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 품의하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전교를 내리는 방식으로 국정에 참여하였다. 이때부터 정희왕후는 실질적인 국왕의 역할을 넘김으로써 성종에게 국정운영의 경험을 쌓게 하고, 자신은 후원자 내지 보조자로서의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7]

이처럼 정희왕후는 국정운영능력이 부족한 어린 성종을 대신하여 왕실의 대표로서 왕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성종이 장성해 감에 따라 왕실 최고어른으로서 그를 보위하는 존재가 되어갔다. 정희왕후는 국정운영에 있어 왕실이라는 권위를 제공하였고 실제 정무는 성종과 원상으로 대표되는 주요 대신집단의 협력 속에서 행해졌다. 원상들은 세조의 종통을 이은 성종을 보좌하고 원상이라는 직위를 통해 권력을 강화하면서 다른 집단들에 비해 정치적 우위를 가질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성종의 보호와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희왕후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였다.[28]

원상제는 세조 말 시행된 이래 예종재위부터 정희왕후 수렴청정기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였지만, 이후로는 두드러진 활동 없이 왕의 훙서 직후

---

25) 《成宗實錄》 권4, 成宗 卽位年 12월 9일 戊午條 ; 《成宗實錄》 권4, 成宗 卽位年 12월 9일 戊辰條.

26) 대표적인 사례가 懷簡王(懿敬世子)의 祔廟와 예종과의 위차문제이다. 위의 문제와 관련하여 성종은 신료들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정희왕후에게 품지를 올려 의견을 관철시킨다. (《成宗實錄》 권59, 成宗 6년 9월 25일 辛未條.)

27) 金宇基, 1973 〈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 《朝鮮史硏究》 10, 179~180쪽.

28) 송웅섭, 2011 앞 논문, 222~223쪽.

대소정무를 행하는 것으로 변모하였다.[29] 원상에 대한 기록은 세조대 기록에서 처음 확인되지만 그 기록에서 원상의 활동은 3건밖에 없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었고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김갑주는 원상제의 기원을 《成宗實錄》에서 찾았다. 그에 따르면 원상제는 세조의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조 13년 9월 명사신이 조선으로 파견되자, 사신접대에 차질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세조가 韓明澮 · 申叔舟 · 具致寬으로 하여금 승정원에 좌정하여 관련 업무를 지휘하도록 한 것에서 기인하였다고 한다.[30]

> 지난 정해년에 白顒 · 黃哲 · 金輔 등 여러 사신들이 와서, 수레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접대하는 일이 매우 번거롭고 긴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세조께서 申叔舟 · 韓明澮 · 具致寬에게 명하여 상시로 승정원에 나아가 더불어 의논하여 처치하게 하니, 원상의 명칭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31]

위의 기사는 성종 6년 大司憲 尹繼謙이 원상혁파를 논하면서 올린 상소이다. 그런데 白顒과 黃哲이 사신으로 파견된 시기는 세조 13년 9월 무렵이고, 金輔가 파견된 시기는 14년 3월 무렵이다. 윤계겸이 丁亥年(세조 13년)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한 것으로 보아, 두 사신파견을 합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같은 해로 착각하여 오기한 것 같다. 비록 13년 8월 대신들로 하여금 白顒과 黃哲 등의 사신접대에 대해 논의했던 기록이 보이지만,[32] 승정원에 좌정하여 업무를 보았던 원상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33]

---

29) 金甲周, 1973〈院相制의 成立과 機能〉《東國史學》12, 48쪽, 참조.
30) 《成宗實錄》권60, 성종 6년 10월 2일 戊寅條 ; 《成宗實錄》권67, 成宗 7년 5월 15일 丁巳條.(金甲周, 위 논문, 35쪽에서 재인용)
31) 《成宗實錄》권67, 성종 7년 5월 15일 丁巳條, "頃在丁亥, 白顒、黃哲、金輔諸使臣之來, 車駕相望而支待之事甚煩且緊. 世祖乃命申叔舟、韓明澮、具致寬常詣政院, 與議處置, 院相之名自此而始."
32) 《世祖實錄》권43, 世祖 13년 8월 23일 丙辰條.
33) 13년 9월 명사신파견이 원상제의 시초가 되는 사건이라는 견해는 金甲周의 연구에서 처음 주장된 이후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되었다.(金宇基, 앞 논문, 35쪽) 李東熙는 13년 9월이 이시애의 난이 진압된 직후라는 점에서 이시애의 난을 원상제 시행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았다.(李東熙, 1994〈朝鮮初期 院相의 設置와 그 性格〉《全北史學》16, 13~14쪽) 金範 역시 이시애의 난 직후 원상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세조가 중신들을 제

반면 14년 3월 파견되었던 金輔 등의 사신접대와 관련해서 세조는 신숙주 · 구치관 · 한명회로 하여금 윤차로 승정원에서 사신에 관한 업무를 보게 한 기록이 존재한다.[34] 다만 《世祖實錄》에서 원상으로서의 정치활동은 존재하지 않고 윤계겸의 언급과 같이 사신접대와 관련된 업무만 등장한다. 따라서 원상제의 설치는 14년 3월 무렵 이루어 졌으며, 원상의 설치 목적이 정치집단 구성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원상제 실시를 전후로 하여 세조의 건강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었다. 세조가 건강상의 문제로 傳位를 선언한 전지에 따르면 세조는 자신의 병이 수년간 지속되었다고 하였다.[35] 실제 세조는 患候로인해 전위 2년 전부터(세조 12년) 유력대신들로 하여금 세자와 서무를 보게 하였다.[36] 세자와 함께 정무를 봤던 유력대신들로 정인지 · 정창손 · 신숙주 · 한명회 · 구치관 · 황수신 · 박원형 등이 확인되는데 이들은 노성한 대신이자 공신들이었다. 세조는 이들을 대단히 신임하였고 세자로 하여금 이들 대신을 사부로서 공경할 것을 강조하였다.[37]

이후 이시애의 난이 발생하면서 한명회와 신숙주가 난에 연루되었지만 이들과 연관성은 크게 없었다. 다만 이시애가 사로잡히고 국문하는 과정에서 한명회와 신숙주를 모반에 엮은 이유로 '頭頭宰相'인 이들을 없애버리면 쉽게 모반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던 만큼, 재상들 중에서도 이들의 입지는 상당한 것이었다.[38] 이들에 대한 세조의 태도는 꽤나 강경하였는데 신료들 앞에서 죄를 열거하거나 구금을 통해 고초를 주면서 권신화된 대신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다.[39] 그러면서도 소수의 유력대신들

어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金範, 1999 앞 논문, 28~29쪽)

34)《世祖實錄》권45, 世祖 14년 3월 20일 庚辰條.

35)《世祖實錄》권47, 世祖 14년 7월 22일 己卯條.

36)《世祖實錄》권40, 世祖 12년 10월 1일 己亥條 ;《世祖實錄》권41, 世祖 13년 2월 16일 壬子條 ;《世祖實錄》권41, 世祖 13년 2월 17일 癸丑條 ;《世祖實錄》권41, 世祖 13년 2월 18일 甲寅條 ;《世祖實錄》권41, 世祖 13년 2월 21일 丁巳條 ;《世祖實錄》권41, 世祖 13년 3월 7일 壬申條 ;《世祖實錄》권41, 世祖 13년 3월 10일 乙亥條 ;《世祖實錄》권42, 世祖 13년 6월 5일 戊戌條.

37)《世祖實錄》권41, 世祖 13년 2월 9일 乙巳條.

38)《世祖實錄》권43, 世祖 13년 8월 12일 乙巳條. "問申叔舟、韓明澮, 何以言謀反乎. 曰盡殺朝廷頭頭宰相, 則事易成矣."

39) 崔承熙, 1998〈世祖代 國政運營體制〉《朝鮮時代史學報》5, 朝鮮時代史學會, 16쪽

은 세조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배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세조는 재위 14년 7월 전위를 결정하면서 유력 대신들로 하여금 4개의 순번으로 나누어 세자와 함께 정무를 보도록 하였는데 그 구성원들은 다음과 같다.[40]

<표 1> 세조 전위시 윤번대신의 인적사항

윤번	성 명	나 이	관 직	임명당시 녹훈	원상임명시기	몰 년
1	鄭麟趾	73세	河東君	靖難, 佐翼	성종 1년 12월	성종 9년
	具致寬	63세	綾城君	佐翼	세조 14년 3월	성종 1년
	洪允成	44세	仁山君	靖難, 佐翼	예종 즉위년 9月	성종 6년
	金 礩	47세	右議政	佐翼	예종 즉위년 9月	성종 9년
2	鄭昌孫	67세	蓬原君	佐翼	성종 1년 12월	성종 18년
	沈 澮	51세	領中樞院事	-	-	성종 24년
	曺錫文	56세	昌寧君	敵愾, 佐翼	예종 즉위년 9月	성종 8년
	金國光	54세	左贊成	敵愾	예종 즉위년 9月	성종 11년
3	申叔舟	52세	高靈君	靖難, 佐翼	세조 14년 3월	성종 6년
	朴元亨	58세	延城君	佐翼	예종 즉위년 9月	성종 1년
	洪達孫	54세	南陽君	靖難, 佐翼	-	성종 3년
	盧思愼	42세	戶曹判書	-	-	연산군 4년
4	韓明澮	54세	上黨君	靖難, 佐翼	세조 14년 3월	성종 18년
	崔 恒	60세	寧城君	靖難, 佐翼	예종 즉위년 9月	성종 5년
	康 純	79세	山陽君	敵愾	-	예종 즉위년
*전거 :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위의 〈표 1〉은 세조의 전위시 윤번을 담당하였던 대신들의 인적사항이다. 이들은 꼭 위의 순번으로 입조하였던 것도 아니었고 윤번하는 구성원의 변화도 있었지만, 교대로 세자를 도와 정무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윤번대신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이 시기를 전후로 설치되었던 원상들이 윤번

; 김순남, 2016〈조선 세조대 말엽의 정치적 추이〉《역사와 실학》60, 역사실학회, 80~81쪽.

40) 이들 윤번대신에 대해서는 김갑주에 의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기존의 설치되어 있었던 원상제가 확대 편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金宇基, 앞 논문, 38쪽) 그러나 이들 윤번대신의 활동은 꾸준하게 보이는데 반해, 원상이라고 칭해지지는 않았다.

대신과 중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이틀 후 세조는 병조와 도총부의 공사는 계문하고 나머지 공사는 원상과 승지가 의논하여 처결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鄭昌孫 · 申叔舟 · 韓明澮 · 具致寬 · 朴元亨 · 洪允成 · 金礩에게 세자를 보필하여 번갈아가면서 숙직하라고 명한다.[41] 이전까지 원상의 역할이 明使臣 접대에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때를 기점으로 그들의 역할이 병권 이외의 정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원상의 활동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원상의 역할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았던 사실을 반영한 것 같다. 이에 반해 대신들이 숙직이나 윤번으로 세자의 서무를 도왔던 기록은 꾸준히 보인다. 이러한 윤번대신과 원상의 구성원은 중첩되고 있지만 세조말엽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지 명확하지 않고, 예종이 즉위하면서 윤번대신이 맡고 있던 정국운영보좌 업무와 원상의 명칭이 결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 高靈君 申叔舟 · 上黨君 韓明澮 · 綾城君 具致寬 · 左議政 朴元亨 · 寧城君 崔恒 · 仁山君 洪允成 · 昌寧君 曺錫文 · 右議政 金礩 · 左贊成 金國光 등을 院相으로 삼아 날마다 번갈아 승정원에 나아가서 庶務를 의논하여 처결하도록 하였다.[42]

예종 즉위초의 원상들은 윤번대신 및 숙직을 명하였던 대신들과도 거의 일치하지만 윤번대신 중 정인지 · 정창손 · 심회 · 노사신 · 강순 · 홍달손 등이 빠지게 된다. 정인지와 정창손은《成宗實錄》에서 세조가 원상의 업무가 고단하기 때문에 연로한 정인지와 정창손을 원상에 참여하지 않게 하였다는 기록에서[43], 그들의 높은 연령으로 인해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강순은 79세로 이들보다 고령이었던 점에서 같은 이유로 배제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심회와 노사신은 연륜있는 대신들이기는 하였지만 이 당시 아무런 공신책봉을 받지 못하였던 만큼, 세조와 정치적으로 보다 덜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

41)《世祖實錄》권47, 世祖 14년 7월 24일 辛巳條.
42)《睿宗實錄》권1, 睿宗 卽位年 9월 21일 丁丑條. “命以高靈君申叔舟、上黨君韓明澮、綾城君具致寬、左議政朴元亨、寧城君崔恒、仁山君洪允成、昌寧君曺錫文、右議政金礩、左贊成金國光等爲院相, 更日詣承政院, 議決庶務.”
43)《成宗實錄》권7, 成宗 1년 8월 19일 甲子條.

예종대 재편된 원상제는 세조대 활약하였던 대신들이 윤번으로 왕의 근시기구인 승정원에 상주하면서 왕과 논의하여 정무를 보는 형태였다. 그런데 예종이 재위 2년 만에 사망하면서 왕을 보필하여 정무를 돕는 원상의 역할이 성종대로 이어지게 되었고, 유주인 성종을 돕는 과정에서 오히려 정치적 영향력은 증대되었다.

원상들은 정책 결정권을 왕과 정희왕후에게 맡겼지만 예종대의 역할과 마찬가지로 윤번으로 승정원에 나아가 모든 국정에 관여하였다. 최초에 원상들은 예종 사후 모두 모여 숙직을 하면서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다가 윤번으로 바뀌고,[44] 이후 경연 領事를 겸무하면서 영경연사의 순번에 따라 2인씩 윤번으로 승정원에 좌정하여 정치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45]

원상들은 승정원에 좌정하여 왕과 수시로 정무에 대해 논의하였지만, 사안이 중요하여 윤번으로 입시하였던 원상과 왕만이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收議를 통해 원상 내부에서 회의하여 가부를 결정하였다. 院相收議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은 다른 어떤 사안들 보다 중요한 것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희왕후에 의해 결행이 내려졌던 사안에 대해서도 온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의견을 대비에게 다시 품의하여 윤허를 받아내기도 할 만큼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상당한 것이었다.[46]

아울러 이들은 領經筵事로 경연을 주재할 만큼 경연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예종대 연로함으로 인해 원상에서 제외되었던 정인지와 정창손은 성종대 원상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인지와 정창손은 원상임명 이전부터 이미 영경연사로 경연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원상에 합류함으로써 영경연사직은 원상이 독점하게 되었다.[47]

원상들은 兼判書制를 통해 6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겸이판으로 구치관, 겸호판으로 구치관 · 조석문, 겸예판으로 신숙주 · 윤자운, 겸병판으로 한명회가 재직하였고, 이들의 영향으로 인해 6조는 독립적인 발언을 하기 쉽지 않았다. 당시 겸판서로 인해 본인은 '자리만 채우는 존재'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이조판서 鄭孝常의 발언에서도 6조에 대한 원상의 영

44)《成宗實錄》권1, 成宗 즉위년 12월 3일 壬子條.
45)《成宗實錄》권1, 成宗 즉위년 12월 8일 丁巳條.
46)《成宗實錄》권1, 成宗 즉위년 1월 25일 甲辰條.
47)《成宗實錄》권7, 成宗 1년 9월 16일 辛卯條.

향력을 알 수 있다.[48] 6조의 상계 내용 중 수의에 부쳐지진 않은 사안들은 중요도가 낮거나, 세세한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전교를 통해 아무 논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경우가 많았다. 또 6조에서 올린 계문들은 이미 원상들의 견해가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다른 의견이 上啓된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사안은 원상들과 논의를 거쳐야 했다. 즉 이러한 겸판서제는 6조가 독립적인 관서로 기능하는 것을 제약하였던 반면 원상들의 영향력을 공고히 해주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2. 敦寧府 復設과 외척의 정치참여

앞서 언급하였듯이 貞熹王后의 垂簾聽政과 院相들의 정치참여는 어린 성종이 장성할 때까지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幼主를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 이들은 군주를 보좌하면서 정국을 안정시킬 수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권력이 정희왕후와 원상들에게 분점 되어갔다.[49] 특히 정희왕후를 중심으로 한 외척세력의 정치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현상이다. 이 시기 외척세력의 성장은 영돈녕이상집단이 대부분 외척으로 구성되었던 것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성종 즉위 초부터 경연을 통해 대간의 정치활동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지만[50], 정희왕후와 원상들이 국정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은 타집단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정희왕후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외척세력은 권력집단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외척이라는 집단은 왕과 관련된 권력구조 하에서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의 정치참여가 법적으로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척세력의 정치적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성종 즉위초 敦寧府의 復設은 이러한 외척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었던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돈녕부는 직사

48) 《成宗實錄》 권48, 成宗 5년 10월 22일 甲辰條.
49) 송웅섭, 2011 앞 논문, 227쪽.
50) 南智大, 1985 〈朝鮮 成宗代의 臺諫 言論〉 《韓國史論》 1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134쪽.

가 없었고 종친 범위 밖의 왕실 친족들에 대한 예우를 위해 설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돈녕부의 설치과정을 살펴보면 외척의 지위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외척에 대한 대우는 국초부터 논의되었는데, 잠재적 왕위 계승권자로서 종친이 견제 받았던 것처럼 왕권안정을 위해 견제의 대상이 되었다. 태종이 처가인 민씨 세력들을 제거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태종은 閔無咎, 閔無恤, 閔無悔 등의 처족을 사사 혹은 자진시켰다.[51] 민씨세력에 대한 처벌을 논하는 과정에서 외척의 처우에 대해서도 논의가 지속되었는데, 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외척에 대한 封君 여부였다.[52] 태종시기 외척에 대한 봉군논쟁이 封君不許로 귀결되면서 외척 세력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위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태종대 종친봉군의 예를 살펴보면, 봉군하는 대신 사환을 금지하고 있었다. 종친봉군의 논리를 외척에 적용하면 봉군폐지에 대한 반대급부로 仕宦의 권리가 주어져야했다. 이러한 외척의 지위는 종친세력이 사환할 수 없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데, 외척에 대한 사환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왕과의 親緣性으로 인해 외척 세력으로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이후 외척세력뿐만 아니라 태조의 서형제 세력을 非태조계라하여 종친과 구분하였고 그들에 대한 봉군을 금지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왕의 친인척이었기 때문에 봉군하지 않으면서도 예우를 고려해야 했다.[53] 그리하여 태종 14년 敦寧府를 설치하였고, 그 구성원으로 '종친 중 태조의 자손이 아니면서 봉군되지 못한 자 · 외척 姻婭 · 왕실外孫'이 대상이었으며 예속된 아문과 직사는 없었다.[54] 세종대에는 돈녕부가 새로이 정비되는

---

51) 金成俊, 1962〈太宗의 外戚除去에 對하여 -閔氏兄弟의 獄〉《歷史學報》17·18, 歷史學會, 584~603 ; 박진, 앞 논문, 311~312쪽, 참조.

52) 조선초기 대표적인 봉군세력으로 종친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외척과 비슷한 성격을 지녔지만 잠재적으로는 왕위계승을 할 수 있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외척에 비해 왕권에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리하여 고려초 부터 仕宦이 금지되었으며 그 반대로 봉군함으로써 예우를 해주었다.(南智大, 1994〈조선초기 禮遇衙門의 성립과 정비〉《東洋學》24,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128쪽, 참조.)

53) 박진, 앞 논문, 313쪽.

54)《太宗實錄》권27, 14년 1월 18일 癸卯條, "初置敦寧府, 無隷屬無職事, 以處宗親之非太祖後, 而不得封君者, 及外戚姻婭與王室之外孫."

데 이는 기존의 돈녕부관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였고 그에 따라 돈녕부직임의 남발이 문제되었기 때문이었다.[55] 그리하여 왕을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촌수가 적용되면서 돈녕부관원의 범위는 축소되어갔다.[56]

이러한 돈녕부 관원들은 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위와 자격으로 임용되었다. 즉 왕위가 바뀌게 되면 외척의 지형도 바뀌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새롭게 즉위한 왕과 관계된 새로운 외척세력들 역시 등장하고 그에 따른 돈녕부직의 수여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새롭게 돈녕부의 관원이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전대 왕과 관련된 외척세력들도 돈녕부직을 유지하였다. 세조 즉위 초에 확인되는 돈녕부 관원으로 단종의 장인인 判敦寧府事 宋玹壽 · 僉知敦寧府事 權完, 정희왕후의 妹夫인 知敦寧府事 成奉祖, 정희왕후의 오빠인 僉知敦寧府事 尹士昕 등이 있다. 이처럼 단종과 세조의 외척세력들이 모두 돈녕부 관원으로 임용되었는데, 이러한 전대왕의 외척이 돈녕부관원에 임용될 수 있는 관례에 대해 세조는 부담을 느꼈던 것 같다. 세조는 돈녕부를 혁파하고 즉위기간 내 復設하지 않는데,[57] 이는 문종과 단종세력을 약화시키는 정책의 일환이었다. 세조는 돈녕부를 혁파하기에 앞서 성봉조를 공조판서로 전직시키고, 윤사분은 이미 봉군되어 돈녕부 직에서 물러나 있었다. 반면 즉위 초부터 역모를 의심받았던 단종의 장인 송현수는 세조 3년 6월 권완과 함께 역모죄로 정계에서 축출되었고, 그로부터 보름 후 돈녕부는 혁파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보면 세조는 본인과 관련된 외척세력들은 관직제수나 봉군을 통해 적절한 대우를 해주었던 반면 단종과 관련된 세력들을 축출하면서 그들이 예우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서 돈녕부를 없애버렸다. 뿐만 아니라 세조는 유력 공신들과 통혼을 하면서 자신의 우익세력을 만들어갔다.[58]

반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종친들을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시킴으

---

55) 申明鎬, 1999〈朝鮮初期 王室 編制에 관한 硏究〉,韓國精神文化硏究院 박사학위 논문, 40쪽.

56)《世宗實錄》권78, 19년 7월 7일 己卯條, "今後以宗姓袒免以上親及六寸姊妹以上夫、異姓六寸以上親及四寸姊妹以上夫、王妃六寸以上親及四寸以上姊妹夫、異姓四寸以上親及三寸姪女以上夫、王世子嬪親父, 除敦寧府職事."

57)《世祖實錄》권8, 3년 7월 5일 丙寅條.

58) 金泰永, 1994〈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대한 一考察〉《韓國史硏究》87, 韓國史硏究會, 138~140쪽.

로써 정국을 안정시키려고 한다. 사실 종친세력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던 만큼 왕권에 잠재적으로 위협이 되는 집단이었다. 이는 단종집권 초기 보위세력이었던 황보인 · 김종서가 종친 견제책을 실시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으며,[59] 세조 그 스스로도 종친으로서 왕위에 오른 경우였다. 따라서 세조는 왕권안정을 위해 주변 종친세력을 제거하였다. 麟坪大君 · 錦城大君 · 魯山君 등 왕실의 유력한 종친세력의 제거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그러나 세조는 일단 유력 종친세력을 제거하고 난 이후 나머지 종친세력에 대해서는 친화책을 썼다.[60] 그리하여 세조대에는 종친사환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친들이 실직으로 나아갔으며 赴試 역시 허용되었다. 특히 세조는 내종친을 침전 내에 머물게 하였고 侍衛 · 侍從 · 王命出納을 담당하게 하면서 이들을 극진히 총애하였다. 세조대 영의정을 역임한 구성군 이준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61]

세조대 폐지되었던 돈녕부는 정희왕후의 수렴청정기간인 성종 즉위초에 다시 설치는데[62] 이는 당시 종친들에 대한 견제책과 대비되는 것이었다. 정희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하면서 왕권에 위협이 되는 종친세력에 대해 경계하였다. 가장 먼저 종친무반의 相避문제를 종용하였고[63] 종친 부시를 금지하였으며 구성군 이준과 같은 유력 종친을 정계에서 축출하였다.[64] 반면 외척에 대해서는 요직임용이 이루지고 있었는데, 성종 즉위초 정희왕후는 그녀의 妹夫인 韓繼美를 겸이조판서로 임명하였다.[65] 정희왕후는 한계미에게 세조대의 공정한 인사를 언급하면서 일찍이 戚里로 관직에 임명된 자가 없었음을 밝히고, 그로 하여금 '족친들 중 부적격자들에 대한 관직임용을 행하지 말 것'을 명한다.[66]

정희왕후의 발언은 외척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인사를 담

59) 韓忠熙, 1995〈朝鮮 世祖代(1455~1468) 宗親硏究〉《한국학논집》2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1쪽.
60) 崔承熙, 1998 앞 논문, 25~26쪽, 참조.
61) 韓忠熙, 1998〈朝鮮 世祖代(1455~1468)의 內宗親에 대하여〉《慶北史學》21, 慶北史學會, 923~924쪽, 참조.
62)《世宗實錄》권4, 1년 4월 26일 甲戌條.
63)《成宗實錄》권1, 즉위년 12월 11일 庚申條.
64)《成宗實錄》권2, 1년 1월 14일 癸巳條.
65)《成宗實錄》권1, 즉위년 12월 1일 庚戌條.
66)《成宗實錄》권1, 즉위년 12월 8일 丁巳條.

당하는 겸이조판서가 외척이었고 그에게 '외척들 중 적격자는 임용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었다.[67] 대표적인 사례가 정희왕후의 동생과 형부인 윤사흔과 성봉조의 원상임명이며, 윤사흔이 우의정으로 있을 당시 그의 아들인 윤계겸이 대사헌으로 임명되었던 것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68] 특히 후자의 사례는 아버지가 원상이자 의정부의 정승으로 있으면서, 관리들을 규찰하는 사헌부의 장에 아들이 임용되는 상황으로 당시 외척의 관직임용의 형태를 잘 보여준다. 정희왕후의 철렴에도 원인이 되었던 투서의 내용에서도 정희왕후와 관련된 외척의 비리가 지적되고 있었던 만큼 이 시기 외척관료의 영향력이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돈녕부의 복설은 이러한 외척세력의 성장을 보여는 주는 것으로 그 관원임명에 있어서 외척들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다.

<표 2> 정희왕후 수렴청정시기의 돈녕부관원 임용

시기	관원명	관직명	왕실과의 관계	구분
성종 1년 4월 26일	윤사분	영돈녕부사	정희왕후 兄	외척
성종 1년 4월 26일	심결	판돈녕부사	소헌왕후 弟	외척
성종 1년 4월 26일	이효상	지돈녕부사	정희왕후 外叔	외척
성종 1년 4월 26일	민효열	동지돈녕부사	장순왕후·공혜왕후 외종조부	외척
성종 1년 4월 26일	심인	돈녕부도정	소헌왕후 조카	외척
성종 1년 8월 27일	한계미	돈녕부판사	정희왕후 형부	외척
성종 2년 8월 8일	최정	돈녕부첨정	소혜왕후 형부	외척
성종 2년 12월 6일	한환	돈녕부도정	안순왕후 弟	외척
성종 3년 1월 11일	윤사흔	영돈녕부사	정희왕후 弟	외척
성종 3년 4월 19일	한치의	지돈녕부사	소혜왕후 弟	외척
성종 3년 5월 16일	이염의	돈녕부도정	정희왕후 형부	외척
성종 3년 12월 9일	한치인	지돈녕부사	소혜왕후 兄	외척
성종 4년 4월 18일	정미수	돈녕부직장	경혜공주(문종女) 子	외손
성종 6년 1월 28일	구치홍	동지돈녕부사	영응대군(태종8子) 장인	종성친족계
성종 6년 6월 8일	이철견	지돈녕부사	정희왕후 이질	외척
전거 :《成宗實錄》				

67) 정희왕후의 친족으로 수렴청정기 정국에 참여하였던 외척들에 대해서는 金宇基의 연구(金宇基, 앞 논문, 201~204)에 정리되어있다.
68)《成宗實錄》권57, 6년 7월 1일 戊申條.

위의 표는 정희왕후 수렴청정기간의 돈녕부관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특징은 비태조계 종실세력에 대한 임용이 세대수가 지남에 따라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며, 종친범위 밖의 종성친족과 외척들의 임용만이 확인된다. 이는 태종시기 최초 돈녕부의 설립취지와 다른 모습이며 점차 왕을 중심으로 하는 친족의 범위에 따라 관원이 임용되었던 것을 확일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정희왕후와 관련된 파평윤씨 외척세력과 청주한씨 외척세력들의 임용이다. 구치홍을 제외한 나머지 돈녕부관원은 모두 외척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성종을 중심으로 한 정희왕후계 · 청주한씨 계열의 외척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돈녕부의 복설과 외척에 대한 예우는 성종의 후원세력으로서 외척의 성장을 꾀한 것으로, 수렴청정기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돈녕부의 체제는 《經國大典》이 완성되면서 확정되었다.[69]

> 왕 : ①종성9촌 이내의 친척, ②이성6촌 이내의 친척
> 왕비 : ①동성9촌 이내의 친척, ②이성 5촌 이내의 친척, ③아버지 영돈녕부사
> 세자빈 : ①동성 6촌 이내의 친척, ②이성 3촌 이내의 친척
> 대군 사위 · 공주의 아들 : 최초 종7품
> (대군의 양첩소생의 사위는 한 등급 내리고, 천첩소생의 사위는 한 등급 더 내린다.)
> 공주 사위 · 왕자군 사위 · 옹주 아들 : 최초 종8품
> (왕자군의 양첩소생의 사위는 한 등급 내리고, 천첩소생의 사위는 한 등급 더 내린다.)

위의 기사는 《경국대전》의 내용으로 다른 제반제도들과 함께 법전체제로 포함된 돈녕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돈녕부직의 제수는 각 왕실의 구성원마다 범위가 다르게 적용되었는데, 왕 · 왕비 · 세자빈은 위의 범위 내에서 고모 · 자매 · 질녀 · 손녀의 남편에게도 벼슬이 주어지도록 규정

---

69)《經國大典》, 〈吏典〉, 敦寧府, "王親·外戚之府. 宗姓九寸·異姓六寸以上親, 王妃同姓八寸·異姓五寸以上親, 世子嬪同姓六寸·異姓三寸以上親, 已上寸內姑·姊妹·姪女·孫女夫除授, 先王·先后親同. 大君女婿·公主子初授從七品, 公主·王子君女婿·翁主子從八品, 大君·王子君良妾女婿各降一等, 賤妾女婿又降一等."

되었다. 이와 더불어 왕비의 아버지는 정1품인 영돈녕부사에 제수하도록 하였고, 선왕과 선왕비의 친척의 경우도 같은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위의 조항들은 세종시기 보다 왕비와 세자빈의 돈녕부 임용범위가 큰 폭으로 확장되었는데, 이는 외척세력의 영향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70]

돈녕부는 미봉군 종실세력의 예우를 위해 설치되었지만 돈녕부관원들은 돈녕부직과 실직 사이를 오가거나 겸직하였다. 특히 성종대 復設된 이후 돈녕부직을 통해 실직으로 나아갈 수도 있었다. 돈녕부관원들은 법적으로 문무직 진출에 제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선 돈녕부직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실직으로 나아갔던 것이다.[71] 그 결과 성종대 외척들은 돈녕부관원에 임명되어 왕의 친족으로 예우를 받으면서 문무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3. 성종친정 초기 臺諫제어의 필요성

貞熹王后의 撤簾으로 자연스럽게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수렴청정체제가 약 7년간 지속되는 과정에서 성종은 성년으로 성장하였고 수렴청정기 말엽에는 대부분의 정사를 정희왕후의 稟旨없이 행하고 있었다. 비록 정희왕후가 외척과 관련된 투서로 인해 철렴을 하게 되었지만, 철렴품지에서 성종의 자질이 충분하였기에 철렴이 가능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을 만큼 군주로서의 업무수행능력을 어느 정도 갖추어나갔던 것으로 보인다.[72] 성종의 정치적 역량강화는 常參 · 經筵 · 輪對의 정례화와 같은 제도를 통해 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제도들은 대간 · 6조 정랑과 같은 언관과 하급신료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였다. 특히 세조대 국왕과 국왕의 측근 대신들 위주의 정국운영 속에서 왕권강화를 위해 관서를 폐지한다든가 종친을 등용한다든가 하는 변칙적인 정국운영과 대비적으로, 성종대는 경국대전을 완성

---

70) 申明鎬, 앞 논문, 64쪽.

71) 최이돈은 돈녕부의 직사가 없었던 이유가 왕실친족들의 문무관 진출을 위한 명분제공 때문이었으며, 실제적으로는 왕실 친족에게 문무직을 열어주는 공식적인 기구로 기능하였다고 한다. (崔異敦, 2012 〈조선초기 왕실 친족의 신분적 성격 -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震檀學報》 117, 震檀學會)

72) 《成宗實錄》 권63, 7년 1월 13일 戊午條.

하고 세조대 운영되었던 변칙적인 제도를 회복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언론기관이 본연의 업무를 행할 수 있었다.

세조대 폐지되었다 성종대 회복하였던 대표적인 예가 경연으로, 이는 성종대의 정치적 성격을 잘 보여주는 제도이다. 성종대의 경연은 1일 3강을 원칙으로 하였고 여기에 夜對까지 더해 유주인 성종의 교육과 국정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경연에서 국정논의가 행해졌던 배경은 성종이 경연을 대하는 태도에서 살필 수 있다. 성종은 '경연에 나아가는 것은 한갓 소리내서 강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전의 자취를 보고 오늘날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는 經史강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할 정도의 수준을, 본인을 포함한 경연참여인원에게 요구하는 것이었다.[73] 이를 통해 성종은 유교 사상의 내면화뿐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승정원을 거쳐 계달한 내용들을 통해 정무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이는 모두 대비에게 보고되었다. 반면 경연을 통해 성종은 신료들과 직접 마주하여 토론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대비의 영향력 밖에서 정치행위를 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경연에서 논의 되었던 사안 중 중대사를 제외하고 간단한 내용들은 따로 품지를 올리지 않고 처리하였다.

성종대에는 경연 참석인원도 이전보다 확대되었다. 세종대 경연이 集賢殿학자들 중심으로 실시되었던 것에 반해, 성종대가 되면 藝文官과 弘文館에서 경연을 전담하였고 유명무실했던 領事 · 知事 · 同知事가 경연입시를 시작하였으며 대간들도 참여하였다. 영사로는 원상을 비롯한 삼정승, 지사 및 동지사로 6조 판서, 참찬관으로 승지와 弘文館 副提學이 참여하였다.[74] 이렇듯 경연에서 논의되었던 국정사안이나 참여인원의 다양화 및 증가는 경연이 차지하는 위상을 변화시켰다. 비록 경연에서 모든 국정사안이 결정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연은 다양한 관료들이 국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자리 잡았고, 《경국대전》 체제 속에서 하나의 제도로 정착하면서 성종대 정국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73) 윤훈표, 2013〈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경연의 변모와 그 의미〉《역사와 실학》51, 역사실학회, 80~81쪽.
74) 權延雄, 1982〈朝鮮 成宗朝의 經筵〉《韓國文化의 諸問題》, 時事英語社, 61~63쪽.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경연을 발판으로 대간들은 이전에 비해 비약적인 정치적 성장을 이뤄냈다. 대간들은 세조와 예종시기의 소극적인 정치참여와 달리 경연을 통해 발언의 횟수를 늘려나가고 있었고,[75] 특히 경연에서 국정을 논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76] 본래 대간의 언론활동은 자체적으로 합의한 의견을, 승정원을 통해 왕에게 계달하는 방식으로 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승정원이 간여할 가능성이 있었고 誤傳될 가능성도 있었다. 箚子의 방식이 도입되기도 하였지만 이것 역시 약식으로 전달하는 것이었고 上疏는 절차상의 까다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경연은 왕과 직접 대면 할 수 있었고 토론과 심의를 통해 의견을 전달 할 수 있었던 공식적인 수단으로 기능하였다.[77] 성종 역시 경연을 통해 철저한 유교적 가르침을 받았고, 納諫의 태도가 '人主의 미덕'이라는 사상에 동의하고 있었다.[78] 대간들은 이러한 제도적 · 도학적 토대에서 언론활동을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었다.

한편 대간 이외의 원상 · 승정원 · 6조의 관원 등도 경연에 참여하고 있었다. 특히 원상들은 영경연사를 독점하면서 경연을 주재하였고, 국정과 관련된 논의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던 朝講에 2인씩 윤대로 참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원상 신숙주는 직접 경연사목을 만들어 진강방법과 참여인원을 정하였던 만큼 성종대 경연제도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79] 원상들은 혹 정승에서 체임되더라도 영경연사직을 유지하면서 경

---

75) 세조시기는 세조와 공신들에 의해 정국이 주도되었기 때문에 대간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고, 예종시기 역시 대간의 정치적 역량은 저조하였다. 일례로 사헌부가 풍문탄핵 허용을 주장하다가 전원이 체직 당하기도 하였고,(《睿宗實錄》 권4, 睿宗 1년 윤2월 11일 丙寅條.) 신하들에 대한 상벌을 논하다가 다시 한번 전원 체직을 당하였다.(《睿宗實錄》 권4 睿宗 1년 3월 12일 丙申條.) 두 사건은 불과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것으로 당시 대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되겠다.

76) 성종대 대간의 언론활동은 친정 이전시기와 친정기를 막론하고 이전시기에 비해 확연히 증가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변화의 폭은 친정 이전시기와 친정기의 차이보다 성종이전시기와 성종대의 차이가 월등히 크다. 언론활동은 세종대에 비해 4.93배, 세조대에 비해 8.9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송웅섭, 2011 앞 논문, 105~107쪽)

77) 남지대, 1985 앞 논문, 127~129쪽.

78)《成宗實錄》 권163, 15년 2월 12일 己巳條.

79)《成宗實錄》 권2, 즉위년 12월 9일 戊午條.

연에 참가하고 있었다.[80] 다시 말해 경연은 원상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제도가 결코 아니었다. 성종대 경연은 특정 관료집단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아니었고 다양한 관료층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주었으며, 그에 따라 대간과 같은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이 낮았던 집단들의 정치적 성장이 돋보였던 것이다.

성종친정기는 대신의 보좌와 대간의 성장이라는 기본적인 구도에서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울러 성종은 成年으로 장성하였고 친부의 追尊을 통해 정통성이 확립되었으며, 정희왕후가 성종의 군주자질을 인정함과 동시에 철렴을 선언하며 친정의 토대가 갖추어졌다. 한명회는 성종의 명으로 정희왕후에게 철렴반대를 극간하였는데 철렴반대를 주장하는 과정에서 성종을 단종에 비유하는 실언해버렸다. 대간들은 한명회의 이러한 실언을 비난하면서 철렴반대를 성종의 역량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 한명회를 끊임없이 탄핵하여 좌의정에서 체직시켰다.[81] 실언은 차치하고서라도 성종의 명을 받고 대비에게 철렴반대를 간했던 한명회의 체직은 성종친정체제가 갖추어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었다. 더 이상 '유주의 보위'라는 목적이 명분을 상실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보위와 정국안정이라는 목표로 실시되었던 원상제 역시 존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명회의 탄핵논리와 같이 원상제의 유지를 주장하는 것은 성종의 정치적 역량을 부정하는 의도로 간주되었던 것이다.[82] 이 시기 大司憲 尹繼謙은 적극적으로 원상제 폐지를 주장하는데 윤계겸은, 다름 아닌 원상 윤사흔의 아들이었다. 이처럼 원상제의 존립목적은 안정된 토대 위에 성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상실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상제는 폐지되고 기존 원상들은 윤번으로 승정원에 좌정하지 않게 되면서 성종과 대면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83]

그러나 원상의 주요 기능은 모두 유지되고 있었던 만큼 이들의 정치적 역

---

80)《成宗實錄》권11, 2년 8월 10일 庚戌條.
81)《成宗實錄》권65, 7년 3월 29일 壬午條.
82) 원상혁파가 논의되었던 제집단의 근거 역시 성종이 군주로서 역량이 충분하다는 것이었다.(《成宗實錄》권19, 3년 6월 19일 甲申條 ;《成宗實錄》권60, 6년 10월 2일 戊寅條; 《成宗實錄》권82, 7년 4월 29일 壬寅條 ;《成宗實錄》권67, 7년 5월 15일 丁巳條.)
83)《成宗實錄》권67, 7년 5월 19일 辛酉條.

량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이 아니었다. 원상출신 대신집단은 국가대사에 대해 의논하는 收議집단으로 정치에 참여하였고 領經筵事 직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원상제의 정치참여 방식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철렴과 관련된 탄핵으로 좌의정에서 체직되었던 한명회 역시, 부원군으로 수의에 참여하고 영경연사직도 유지하면서 다른 정승들과 똑같이 정치에 참여하였고 있었다. 한명회가 체직된 이후 심회가 좌의정으로 임명되는데, 성종은 기존원상에 심회를 포함하여 증경정승 · 제정승 · 정승으로 호칭하면서 收議에 참여시켰다. 간혹 이들이 입궁하기 어려운 경우 주서를 집으로 보내 사안을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을 만큼 이들의 국정참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84] 이 시기 증경정승 혹은 정승으로 불리는 집단은 원상시기의 구성원과 매우 비슷하지만, 원상들에 비해 독자적 收議의 비율이 감소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원상제 폐지와 관료들의 정치참여확대라는 제도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원상을 비롯한 노성대신들의 사망 때문이었다. 원상출신 대신들은 세조시기부터 이미 고령이었기 때문에 성종친정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사망하여 領敦寧以上집단이 형성되기 전 정창손 · 한명회 · 윤사흔 밖에 남아 있지 않았다.

한편 이 시기 대간들은 한명회의 탄핵을 시작으로, 대신과 관계된 수많은 비위사건을 탄핵함으로써 발언을 늘려나간다. 이들은 공론의 소재처를 자임하였고 성종역시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들의 언론활동을 보장하였다.[85] 당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던 한명회를 좌의정에서 체직시켰던 사실은 대간의 정치적 성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다.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체직에 따른 한명회의 역할이 변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정승체임 자체만으로 이전 시기에 비해 큰 의미를 지닌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시기 대간들의 탄핵활동의 한계도 분명했다. 발언빈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했지만 탄핵이 성사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86] 특히 贓罪와 같은 경우는 거의 탄핵되지 않았고, 탄핵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번복되는 경우도 많

84)《成宗實錄》권84, 8년 9월 5일 己巳條.
85) 송웅섭, 2011, 앞 논문, 115쪽.
86) 성종대 대간의 인사탄핵의 빈도는 매우 높지만 탄핵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정3품 이상의 고위관료들의 인사에서는 약5%정도만이 성사되었고, 부분적으로 수락되는 경우도 10%미만이었다.(정두희, 1994 앞 책, 54~55쪽, 참조)

았다. 일례로 徐居正은 파직 후 3개월 만에 재임용되었고 이에 대해 대간들은 《經國大典》의 조항을 들어 1년 후에 임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87]

대간들은 대신들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공론을 내세우며 국정전반에 개입하고 있었다. 특히 성종의 개인행위에 대한 간언들은 성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고, 성종 역시 대간들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몇 가지 사례는 이를 말해준다. 먼저 능행에 앞서 능 근처의 호랑이를 몰아내는 논의로, 성종은 제사 후 호랑이를 사냥하고자 하였으나 대간들은 이를 戱事로 지칭하며 만류하였다. 성종은 이에 대해 사냥이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며, "대간에게 의논하게 한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자 한 것이지 그 말을 반드시 듣고자 함이 아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88] 또 다른 예는 성종이 畵工으로 하여금 草木과 禽獸를 그리게 한 것에 대해 대간이 비판한 사건이다. 성종은 이에 대해 도화서 폐지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면서 "선왕의 영정을 폐하면 臣子의 뜻에 편하겠는가?"라고 비꼬아 반문하였다.[89] 그러나 이 문제는 며칠 후 다시 경연자리에서 언급되었고 성종은 대간들에 대해 "너희들의 말은 고집불통이다." 혹은 "대간들은 나를 손조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자 세세한 일들을 모두 다 말한다."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였다.[90] 이 과정에서 대간의 僧職 서경권한을 빼앗고 고신을 주도록 하는 조처를 취한다.[91] 대간들은 佛事에 관한 간언도 지속적으로 성종에게 건의하는데, 이 것 역시 성종의 심기를 건드리게 된다. 대사간 安寬厚는 낙산사의 옛길을 열어 백성들로 하여금 해산물을 채취하게 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세조대부터 그러한

87) 서거정은 성종8년 4월에 파직되어 같은해 7월에 藝文館大提學 知成均館事로 임명된다.(《成宗實錄》권79, 8년 4월 25일 壬戌條 ;《成宗實錄》권82, 8년 7월 17일 壬午條) 서거정의 복직 이후 대간들은 끊임없는 탄핵을 지속하지만 결국 서거정을 체직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였다.

88)《成宗實錄》권83, 8년 8월 28일 壬戌條, "使議於臺諫者, 欲令爾等知之, 非必欲聽其言也."

89)《成宗實錄》권95, 9년 8월 4일 癸巳條, "若廢先王影幀, 則於臣子意安乎."

90)《成宗實錄》권95, 9년 8월 10일 己亥條, "爾等之言膠固不通. … 臺諫欲使予不得措手, 細瑣之事, 屑屑言之."

91)《成宗實錄》권95, 9년 8월 4일 癸巳條.

것이라고 진언하였다. 이에 대해 성종은 “세조대에는 대사간이 없었던가?”라고 반문하고 있다.[92] 그 자리에서 僧職 서경권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자 “이렇게 세세한 것에 대해 어찌 말을 하는가?”라고 하며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93]

대간들의 간언에 대해 성종이 이처럼 감정적으로 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임사홍의 대간 붕당 조장사건과 연관이 있다. 이 사건은 戊戌之獄 불리는 사건으로 都承旨 玄錫圭와 同副承旨 洪貴達의 다툼으로부터 시작된다.[94] 동부승지 홍귀달은 도승지인 현석규와 협의하지 않고 차서를 뛰어넘어 계달하였고 이에 대해 분노한 현석규가 ‘너(爾)’라고 꾸짖은 사건이었다. 홍귀달이 아뢴 내용 자체가 그릇된 것이었기 때문에 홍귀달의 告身이 추탈되었는데, 대간들이 재차 현석규와 홍귀달의 다툼에 대해 탄핵을 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종은 言根을 묻게 되었고 司諫 朴孝元은 성종에 대해 ‘言官을 대하는 것이 訟事하는 자와 같다.’고 간언하였다. 이러한 대간의 거친 간언에 대해 성종은 적잖게 당황하였던 것 같다. 이러한 박효원의 언사에 대해 대신인 심회와 이극배는 그것이 지나쳤다고 말하였지만, 성종은 말을 잃고 가만히 있다가 자리를 파하였다.[95] 이후 현석규와 임사홍의 다툼도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 모든 관료들이 현석규를 체직하라고 청하였다. 그럼에도 성종은 오히려 현석규를 두 자급 높여 大司憲에 임명하였고,[96] 이에 대해 또 다시 대간의 공박을 받자 刑曹判書로 임명하면서 사실상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97]

그러나 이후 李深源의 상소에서 임사홍이 대간을 사주하여 현석규를 탄핵한 것이 발각되었다. 그리고 임사홍과 대간의 연결고리가 된 인물이, 성종을 ‘송사하는 자’로 비유한 박효원이었다.[98] 그 결과 임사홍을 비롯한 대간들은 붕당조성죄로 유배되어 성종대 내내 관직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 사건에 대한 사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임사홍의 붕당조성사건은 성

92)《成宗實錄》권95, 9년 8월 7일 丙申條.
93)《成宗實錄》권95, 9년 8월 10일 己亥條.
94)《成宗實錄》권82, 8년 7월 17일 壬午條.
95)《成宗實錄》권82, 8년 7월 24일 己丑條.
96)《成宗實錄》권83, 8년 8월 26일 庚申條.
97)《成宗實錄》권83, 8년 8월 29일 癸亥條.
98)《成宗實錄》권91, 9년 4월 29일 庚申條.

종으로 하여금 공론의 소재처로서 대간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99] 비록 몇 사람의 일로 간언을 부정하는 태도를 스스로 경계하고 있었지만, 대간에 대한 불신은 "간언을 따른다는 명성을 얻고자 옳지 않은 말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가?"라는 성종의 표현에서 알 수 있다.[100] 이후 성종은 언근을 캐묻기도 하고[101], '사간원의 발언에 대해 시비가 거꾸로 되었다.'는 표현까지 쓰면서 거부하였다.[102] 한편 대신들도 이 사건을 근거로 대간들을 공박할 수 있게 되었다.

> 상당부원군 한명회가 말하길, "臺諫은 임금의 耳目이니, 대간이 아니라면 공사에 대해 말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金彦辛과 같은 무리들은 붕당을 맺어 조정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하였는데, 다행히 성상의 명철함으로 그것을 분변하였습니다. 이로써 보건데 비록 대간의 말이라도 일일이 들어주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였다.[103]

위의 한명회의 발언은 사헌부의 상소에 대한 성종의 물음에 답한 것인데, 붕당조성의 전력으로 인해 '대간의 간언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이 대신들로부터 주장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성종 역시 적극적으로 동조하였고, 대간의 언론활동에 대해 대신들과 의논하였다는 말로 무마시키는 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西征을 나가는 것에 대해 사헌부와 사간원이 합사하여 모두 반대를 하였지만 '정승들과 논의를 통해 결정한 것을 어찌 대간의 말로 고치겠는가?'라는 말로 물리쳐버렸다.[104]

이렇듯 성종대는 여러 관료층의 정치활동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었던 시기였고, 그 중에서도 대간들은 공론의 소재처로 자처하면서 정치적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임사홍의 붕당조성사건을 통해 대간에 대한 성종의 불신이 싹트고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는 대간을 대하는

---

99)《成宗實錄》권91, 9년 5월 8일 己巳條.
100)《成宗實錄》권112, 10년 12월 13일 甲子條.
101)《成宗實錄》권98, 9년 11월 22일 己卯條.
102)《成宗實錄》권112, 10년 12월 11일 壬戌條.
103)《成宗實錄》권99, 9년 12월 12일 己亥條. "上黨府院君韓明澮曰, 臺諫爲王耳目, 非臺諫則無有言事者. 然向者如金彦辛等結爲朋黨, 幾危朝廷, 幸賴聖明辨之, 以此觀之, 雖臺諫之言, 不可一一聽之. "
104)《成宗實錄》권111, 10년 11월 18일 己亥條.

성종의 태도는 감정적인 반응이나 과격한 발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원상출신의 소수 대신집단은 원상제가 폐지되면서 승정원에 좌정할 수 없게 되고 대간의 정치적 성장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수의와 경연을 통해 정국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들이 비록 대간의 탄핵으로 인해 체직을 받는다하여도, 부원군의 지위를 가지고 정국운영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이들은 고령으로 인해 연이어 사망하면서 집단 구성원자체가 줄어들고 있었다.

Ⅲ. '領敦寧以上'집단과 그 정치활동

1. '領敦寧以上'의 구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종친정 초기 대간들은 공론에 입각하여 대신들을 탄핵하고 간언을 하면서 국정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대간에 대해 성종은 조금씩 적대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성종은 任士洪과 대간의 붕당조성 사건을 계기로 공론의 소재처로 자임하였던 대간들에 대해 불신하기 시작하였다. 임사홍의 붕당조성사건이 시사하는 또 다른 사실은 玄錫圭 · 任士洪과 같은 승지들을 통해 친왕세력을 조성하고자 했던 성종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들은 청요직을 두루 역임하고 승정원의 승지로 재직하면서 近臣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들 내부의 다툼과 대간의 집요한 탄핵으로 인해 끝내 정계에서 축출 당하게 되었다.[105] 한편 원상제 폐지 이후 기존 원상들은 曾經大臣으로 收議를 주도하였고 領經筵事 직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국정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원상출신대신들은 이미 고령의 나이였기 때문에 친정초기 대부분이 사망하여 대신집단의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성종은 정희왕후라는 왕실세력과 원상이라는 대신세력의 보위를 받으며 성장한 끝에 친정을 시작하였지만, 성종의 친정은 철렴이나 원상제 폐지와 같은 보위를 위한 장치가 해체되는 과정을 수반하였다. 그리하여 안정적인 친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본인을 뒷받침 해줄 정치세력이 필요하였다. 더구나 대간의 지나친 간섭, 승지를 중심으로 한 친왕세력 구성의 실패, 원상을 비롯한 공신세력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종은 정국운영의 재편을 모색해야했고, 이 시기 영돈녕이상집단이라는 소수 대신집단의 등장에서 성종의 구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영돈녕이상집단은 성종 11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이로부터 성종치세 말엽까지 정국운영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105) 宋雄燮, 2011 앞 논문, 87~88쪽.

<표 3> 領敦寧以上의 인적사항

성 명	공신책봉	영돈녕이상 당시 관직	왕실관계	몰 년	비 고
鄭昌孫	佐翼, 翊戴 佐理	영의정, 봉원부원군	-	성종 18년 1월	원상
韓明澮	靖難, 佐翼 翊戴, 佐理	상당부원군	공혜왕후 父 장순왕후 父	성종 18년 11월	원상
尹士昕	佐理	파천부원군	정희왕후 弟	성종 16년 5월	원상
沈 澮	翊戴, 佐理	청송부원군	소헌왕후 弟	성종 24년 1월	
尹弼商	敵愾, 佐理	좌의정, 영의정, 파평부원군	공혜왕후 6촌 정희왕후 8촌	연산군 10년 4월	
洪 應	翊戴, 佐理	우의정, 좌의정	정희왕후 5촌 명숙공주 시부	성종 23년 4월	
盧思愼	翊戴, 佐理	선성부원군, 영중추부사 우의정, 좌의정	소헌왕후 이질	연산군 4년 9월	겸판서
李克培	佐翼, 佐理	영중추부사, 광릉부원군 우의정, 영의정	-	연산군 1년 10월	겸판서
尹 壕	-	영돈녕부사, 우의정	정희왕후 7촌 정현왕후 父	연산군 2년 4월	
許 琮	敵愾, 佐理	우의정	-	성종 25년 2월	
愼承善	翊戴, 佐理	우의정	연산군 장인 임영대군 사위	연산군 8년 5월	
전거 :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위의 표에서 살펴볼 수 있는 영돈녕이상 집단의 특징은 공신출신의 유력대신이라는 점이다. 領敦寧府事 윤호를 제외하면 佐理功臣에 책봉된 親功臣세력으로 府院君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고위관료들이었다. 이들은 時 · 原任의 정1품 이상 고관들이었는데, 실직을 가지지 않은 원임대신들로 정창손 · 한명회 · 윤사흔과 같은 원상 출신과 증경대신이었던 심회가 있었으며 시임대신으로는 정1품 관직인 三政丞 · 領中樞府事 · 領敦寧府事로 있던 윤필상 · 홍응 · 노사신 · 이극배 · 윤호로 구성되었던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들 중 노사신 · 이극배 · 윤호의 경우 삼정승을 역임하지 않았다. 윤호는 영돈녕부사였고 노사신 역시 선성부원군 이전에 영돈녕부사를 지냈던 관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돈녕이상 집단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극배의 경우는 왕실과 특별

한 친인척관계도 아니었고, 그의 직임이었던 영중추부사는 收議를 주도하던 관직도 아니었다. 다만 이극배의 아버지 李仁孫은 세조가 잠저에 있을 때부터 그와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이극배 역시 세조로부터 군사실무 능력을 인정받기도 했다.[106] 이후에도 그는 병조판서에 오래도록 재직하면서 그 능력을 인정받아 성종의 총애를 받는 관료였다. 그는 증경정승들이 사망하면서 收議집단이 줄어드는 와중에 판중추부사 · 영중추부사로 재직면서 증경정승과 더불어 收議에 참여했으며, 경연지사로 오래도록 성종의 곁에서 보필하였다. 이러한 실무적 능력을 통해 영중추부사로 영돈녕이상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특징은 왕실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외척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대간들의 언론활동이 거세지는 시점에서 친왕적인 집단이 필요하였고 혈연적으로 가까운 외척을 이용하였던 것을 보여준다.[107] 성종은 앞서 승지들을 통해 친왕세력을 구성하려고 하였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외척을 통해 보다 확고한 후원세력을 구성하려 하였다. 특히 영돈녕부사 윤호는 증경대신이나 공신이 아니었음에도 國舅로 영돈녕부사에 오르면서 이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윤호는 당시 폐비 윤씨를 대신하여 새롭게 왕비가 된 貞顯王后의 親父였고, 성종은 그를 기용하여 기존 증경정승 및 삼정승 외에 다른 정1품직을 추가하여 보위집단을 공고히 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윤호는 이전에 京畿觀察使로 임명되면서 성종과 대간의 마찰을 야기하였던 인물이었다. 그는 외척이라는 이유로 대간들로부터 탄핵을 받았고, 성종은 사사로운 정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을 관철시킨다.[108] 이 사건이 이후 윤호는 종2품인 병조참

106) 문숙자, 2011〈조선 초기 상신 이극배의 생애와 활동〉《조선 중기 훈구·사림정치와 광주이씨》, 지식산업사, 68~69쪽.

107) 宗親赴試의 허용이나 고관에 종친을 등용하였던 세조대 종친우대 정책은 성종대에 이르러 대폭 축소된다. 특히 종친부시금지의 근거로 《대전》과 조종성헌을 들어 종친의 정치참여가 세조대 일시적인 것이고 항식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폐지된다(《成宗實錄》권10, 2년 5월 20일 壬辰條 ;《成宗實錄》권10, 2년 6월 8일 己酉條 ;《成宗實錄》권33, 4년 8월 4일 癸亥條.). 성종대의 정국운영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세조대의 제도들을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종친의 정치참여를 허용할 수 없었으며, 구성군 · 밀성군 · 효령대군과 같은 유력 종치세력들도 유배 및 사망하였기 때문에 성종의 보위세력이 되기에는 세가 부족하였다.

판, 정1품인 영돈녕부사로 연달아 轉任하였는데,[109] 영돈녕부사는 특별한 직사가 없었기 때문에 대간들은 그의 3계급 승진에 대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經國大典》에는 영돈녕부사를 국구로 하는 조항이 실려있는데, 윤호의 임명이전 영돈녕부사로 國舅가 임명되는 경우가 없는 것으로 보아 국구를 영돈녕부사로 하는 조항은 이 시기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은 이러한 조항을 새로 만들면서, 윤호의 전직이나 사망에 대비하여 다른 國舅나 외척대신을 임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성종 25년 영돈녕이상 집단 내에서 우의정이었던 허종이 사망하였는데, 그를 대신하기 위해 영돈녕부사인 윤호를 임명하려하였던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윤호가 우의정으로 전직을 하게 되면 다른 국구로 영돈녕부사를 삼아 영돈녕이상 집단을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윤호의 우의정 임명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세자의 장인이었던 신승선을 우의정에 임명하면서 영돈녕이상 집단을 재편하였다.[110]

이렇게 형성된 영돈녕이상 집단은 그 내부에서 정1품직을 돌아가며 역임하였는데, 이는 부원군의 지위를 가진 덕분에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집단을 유지하였다. 의정부 정승 같은 실직을 가진 인물이 부원군으로 물러나면 다른 영돈녕이상이 그 자리로 轉任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 영돈녕집단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영돈녕이상으로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사가 행해졌다. 가령 정창손이 영의정에서 부원군으로 물러나면 좌의정 윤필상이 영의정으로 승진하고, 우의정이었던 홍응이 좌의정으로, 영중추부사였던 이극배가 우의정으로, 선성부원군이었던 노사신이 영중추부사로 임명되는 연쇄적인 인사조처가 행해졌던 것이다.[111] 한편 성종 21년에는 이극배가 건강문제로 우의정에서 광릉부원군으로 물러나면서, 당시 영중추부사였던 노사신이 우의정으로 전직하였다.[112] 그에 따라 영중추부사

108)《成宗實錄》권98, 9년 11월 17일 甲戌條.
109)《成宗實錄》권110, 10년 윤10월 22일 甲戌條 ;《成宗實錄》권125, 12년 1월 9일 甲申條.
110)《成宗實錄》권296, 25년 11월 25일 庚戌條.
111)《成宗實錄》권176, 16년 3월 28일 壬午條.
112)《成宗實錄》권207, 18년 9월 28일 甲子條.

자리는 공석이 되었지만 따로 영중추부사를 임명하였던 기록이나 다른 인물이 그 직위로 활동하였던 기록을 찾아볼 수 없고, 영돈녕이상 집단의 구성원 역시 변함이 없었다. 따라서 영돈녕이상 집단 내부에서 누군가 영중추부사를 맡았거나 공석으로 두었을 것이다.

이들은 직위가 바뀌어도 역할은 변하지 않았고, 실직에 있든 부원군의 지위에 있든 영돈녕이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실직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성종친정 이전 원상들이 실직여부에 상관없이 정치에 참여하였던 것과 유사하다. 성종대 원상이나 영돈녕이상과 같은 소수의 유력대신들은 대간들의 탄핵을 받고 실직에서 체직되어도 실제 정치참여에 제약을 받지 않았는데, 이는 이들의 정치적 역량이 공고히 유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대간이 유력대신을 실직에서 체직시킨 것 자체가 이전시기와 비교했을 때 큰 성장을 이뤄낸 것이지만 실제 정치적 역할이 변하지 않았던 만큼 이 시기 영돈녕이상의 지위는 상당한 것이었다. 가령 영돈녕이상에서 윤호와 윤필상은 대간들의 탄핵에 의해 체직되지만, 각각 영돈녕부사 · 부원군으로 직위를 옮기면서 기존의 收議참여와 영경연사직을 유지하였다. 영돈녕이상 중 삼정승을 제외하면 부원군 · 영중추부사 · 영돈녕부사 등은 職事가 없는 관직이었지만 소수의 대신집단을 구성하면서 역할의 차이 없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다.

2. 영돈녕이상의 정치활동

영돈녕이상의 정치활동은 '소수 대신집단'이라는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한다. 성종친정 초기 원상출신 대신들의 연이은 사망으로 소수 대신집단은 와해될 위기에 봉착했다. 성종은 이러한 소수 대신집단을 영돈녕이상으로 재편하면서 왕권보위집단을 구성하였고, 이 과정에서 원상들이 행하던 정치 참여방식을 상당부분 받아들였다. 원상들이 승정원에 좌정하여 모든 정무를 보던 형태는 사라졌지만, 왕을 보필하는 소수 대신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은 유지되고 있었다.

1) 收議

먼저 이들은 성종대 소수대신들이 행했던 收議를 통해 국정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중대사를 논의하였다. 收議는 의논한 내용을 수렴하여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조선 초기 議政府와 六曹 등에서 중요사안에 대해 의논하여 결행하는 형태가 존재하였지만, 성종대에 이르러 처음 收議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국가 중대사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하는 보편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세조시기에는 六曹直啓制가 행해지고 세조와 세조즉위를 도운 소수 대신세력은 6조 등에서 계달된 특정 사안에 대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 세조 사후 이러한 소수 대신세력은 원상으로 활약하면서 예종과 收議를 통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였고, 성종 재위시기 소수 대신 위주의 收議는 가장 보편적인 의사 결성방식이 되었던 것이다.

성종친정 이전 성종은 원상 收議를 통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원상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러한 수의를 통한 의사결정형태가 지속되었다. 소수 유력대신들은 특정사안을 자체적으로 회의하여 성종에게 보고하거나, 성종이 직접 불러서 함께 회의를 하면서 가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모든 대신들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었고 노성하고 경험이 풍부한 대신들이 참여하였다. 이러한 대신수의는 친정 이전 원상에 의해 주도되었고, 친정 이후에는 영돈녕이상에 의해 주도적으로 행해졌다. 대신수의는 경연과 함께 국정운영의 주된 방식이었고 성종은 경연 못지않게 대신수의를 장려하고 그 구성원들의 의견개진을 장려하였다.

> 임금이 말하길, "收議란 여러 의견을 보고자 함이니, 옳으면 따르고 그르면 따르지 않는 것이다. 만약 옳지 못한 의견이라 하여 죄를 준다면 다른 날 의논하여 좋은 계책을 얻고자 할 때 반드시 뇌동할 것이니 누가 다른 의견을 내겠는가? 김유가 말하길, "張武가 뇌물을 받았으나 漢 文帝는 상을 주었고, 順德이 뇌물을 받았으나 唐 太宗은 물품을 하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金紐의 말은 옳지 않았기 때문에 국문을 명한 것이지만, 정승은 국문할 수 없다. 훈구대신을 어찌 한 번의 말 잘못으로 꾸짖을 수 있겠는가?"하였다.113)

113) 《成宗實錄》 권99, 9년 12월 11일 戊戌條, "上曰, 凡收議, 欲觀群議, 是則從之, 否則不從. 若以誤議罪之, 則他日議得, 必皆雷同, 誰有異議乎? 金紐言: '張武受賂, 漢 文加

위의 사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李繼孫과 李封이 백성을 침학한 것에 대해 정승들이 收議하였고 收議한 내용에 대해 대간들이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다. 처음 이계손과 이봉의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대간들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예조참판 金紐는 상소하여 이들을 비호하였고 성종은 정승들에게 다시 收議할 것을 명하였다.[114] 이에 대해 정승들이 김유의 의견에 동의하였고 대간들은 김유와 정승들 모두 비판하면서 국문하기를 청하였던 것이다. 성종은 김유에 대해서 국문하기를 허락하였지만 정승들에 대해서는 끝내 국문을 허락하지 않았고, 收議의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 죄를 묻지 않게 하여 의견개진을 진작시키고 있었다. 이처럼 收議대신들은 김유과 같은 다른 대신들에 비해 우대를 받으며 收議에서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었다.

영돈녕이상의 收議과정은 6조 · 지방관을 비롯한 실무관서로부터 계달된 사안 · 경연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 · 기타 상소에서 계달된 사안들 중 쉽게 처결하기 어렵고 중대한 것들이나 성종의 개인적인 의견확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논의내용을 성종에게 올리면 성종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간혹 영돈녕집단 내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논의진행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의정부 당상이나 사안과 관련된 관원을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가령 북방정세에 대한 收議를 하면 일찍이 북방의 관찰사나 절도사를 역임했던 재상들을 함께 불러 收議하였다. 영돈녕이상 收議에서 6조 · 승정원 · 한성부로 확대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확대회의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면 또 다시 '영돈녕이상'에게 회의하여 최종결정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收議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위상은 어느 정도였을까?

賞, 順德納賂, 唐宗有賜', 金紐之言非是, 故命鞫之, 政丞不可鞫也. 勳舊大臣, 豈可以一言之非而責之乎?"

114)《成宗實錄》권99, 9년 12월 7일 甲午條.

<표 4> 성종대 領敦寧以上 收議의 분석

년도 / 내용	11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전체 收議 건수	5	30	108	101	96	91	34	98	96	91	110	82	85	119	96	1,242
관철 건수	3	13	72	63	58	52	25	73	48	63	81	46	51	86	58	792
관철 비중	60%	43%	67%	62%	60%	57%	73%	74%	50%	69%	74%	56%	60%	72%	60%	64%
독자收議 건수	4	21	80	65	68	43	15	70	52	44	51	21	22	22	6	583
독자收議 비중	90%	70%	74%	64%	71%	47%	44%	71%	54%	48%	46%	25%	26%	18%	6%	46%
*전거 : 《成宗實錄》																

〈표 4〉는 영돈녕이상들만으로 행해진 독자收議와 다른 집단들과 함께 행한 收議 내에서 그들의 의견이 관철되었던 횟수 및 비중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성종친정 초기 대신수의는 그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였고 독자수의의 비중 역시 대폭 하락하였다. 이는 원상출신 대신들의 사망에 따라 수의 자체가 줄고 다른 신료집단과 연합하여 收議한 결과였다. 위의 표에서 보이는 독자收議 비율은 영돈녕이상이 성립한 이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영돈녕이상 역시 고령의 대신들이었기 때문에 성종 말엽으로 가면서 연이어 사망하였다. 이로 인해 다른 신료집단과 연합하여 收議를 하는 경우가 시간이 지날수록 빈번해지는데, 특히 성종 22년 이후부터는 독자수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연합수의의 구성집단은 영돈녕이상과 의정부 당상들이었고, 의정부당상들 역시 영돈녕이상 바로 다음의 고관들이었다.

이처럼 영돈녕이상의 독자비율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었지만, 收議 과정에서 이들의 관철비율이 감소한 것은 아니었다. 독자수의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했던 성종 22년 이후 영돈녕이상의 收議 관철비율은 성종대 전체관철비율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시 말해 영돈녕이상은 收議형태와 상관없이 收議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성종대 전체에서 이들의 관철 비율은 64%정도 이지만 미결된 收議를 제외하면 그 비율이 79%로

높아지는 만큼 영돈녕이상은 收議에서 지대한 영향을 행사하고 있었다.

영돈녕이상은 그 구성원이 노성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했기 때문에, 영돈녕이상 收議는 정책결정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러한 영돈녕이상 收議는 성종에게 있어 정책을 결정하는 근거로 작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속되는 대간의 간언에 대한 반박의 근거로 기능하였다.

> 領敦寧以上과 議政府 당상을 불러 묻길, "정사의 권한이 임금에 있어야 옳은 것인가? 臺閣에 있어야 옳은 것인가? 각자 말하여라."하였다. 심회 등이 아뢰길, "정사의 권한은 마땅히 임금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래에 있다면 어찌 옳다고 하겠습니까?"하였다.115)

위의 자료는 성종 14년 宋瑛의 대간임명을 놓고 성종과 대간의 공방이 이어진 끝에, 성종이 영돈녕이상과 의정부 당상으로 하여금 이에 대해 收議하게 한 것으로 대간에 대한 성종의 강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던 임사홍의 대간붕당조성 사건이 대간에 대한 성종의 불신을 촉발시켰던 사건이라면, 송영의 대간임명과정은 대간과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사건이었다. 성종 12년 12월 송영은 장령에 임명되었는데 대간들은 '송영이 端宗 장인인 宋玹壽의 조카로 난에 연좌된다.'하여 체직시켰다.116) 성종은 이듬해 6월 다시 송영을 지평으로 임명하는데,117) 대간들의 반대에 의해 또다시 체직되었다. 성종은 이에 대한 반발로 송영을 승직시켰다가 성종 14년 6월 다시 한 번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하였다.118) 이러한 성종의 인사에 대해 대간들은 끊임없는 탄핵을 요구하였고, 성종은 어쩔 수 없이 송영과 사헌부관원을 모두 체직시키지만, 이듬해인 15년 6월 다시 송영을 사헌부 장령으로 임명하여 끝내 의견을 관철시켰다.119)

---

115)《成宗實錄》권156, 14년 7월 24일 戊辰條, "命召領敦寧以上及議政府堂上, 問曰, 政在人主可乎, 政在臺閣可乎, 其各言之. 沈澮等啓曰, 政柄當在人主, 若在於下, 豈爲可乎."
116)《成宗實錄》권136, 12년 12월 15일 乙卯條.
117)《成宗實錄》권142, 13년 6월 30일 丁卯條.
118)《成宗實錄》권145, 13년 윤8월 15일 辛巳條; 《成宗實錄》권155, 14년 6월 28일 己丑條.
119)《成宗實錄》권159, 14년 6월 23일 戊寅條.

성종과 대간은 송영의 대간임명을 둘러싸고 4년간 4번의 임명과 3번의 체직을 이어갔고 그로 인한 갈등과정에서, 이에 대한 영돈녕이상의 收議 역시 지속되었다. 위의 자료에서 성종은 대간이 왕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송영 임명에 대한 의견을 묻지만 사실상 본인의 불만을 표출하는 장으로 만들었다. 영돈녕이상은 성종을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한편 송영의 체직에 대해 대간들의 논핵으로 인해 사헌부 내부의 반목을 야기했기 때문에, 송영을 체직하거나 사헌부 전체를 체직시키는 것을 주장하였을 뿐 대간의 송영체직논리인 '송현수와의 연좌'를 부정하였다. 이러한 영돈녕이상의 주장으로 말미암아 성종은 대간의 끊임없는 공박으로부터 버틸 수 있었고 결국 송영의 대간임명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성종대 대간의 언론활동은 私感이 들어가 있다고 판별되지 않는 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었고 간언을 장려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기본적인 유교원리였기 때문에 대간의 활동자체를 비난할 수 없었다. 그 결과 대간에 대한 성종과 대신들의 긴장관계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성종재위 말엽으로 갈수록 대간들의 언론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있었고, 성종 역시 영돈녕이상 收議를 근거로 대간을 물리치곤 하였다.

> 司憲府執義 李禮堅 등이 차자를 올려 李績의 일을 다시 논하니 領敦寧以上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沈澮 · 尹弼商 · 洪應이 의논하길, "이집의 일은 이미 전하께서 결정하였으니 추론할 수 없습니다."하였다. 전교를 내리길, "이미 정상을 참작했고 대신과 의논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제 고칠 수 없다." 하였다.120)

위의 자료는 계속되는 대간의 논박에 대해 영돈녕이상에게 收議를 명하여 결정하고, 성종이 收議결과를 근거로 대간의 논리에 맞서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영돈녕이상 收議는 대간의 거센 간언에 맞설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영돈녕이상의 구체적인 收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20)《成宗實錄》권258, 22년 10월 25일 戊辰條, "司憲府執義李禮堅等上箚子, 更論李績事, 命議于領敦寧以上. 沈澮、尹弼商、洪應議, 李績事旣御決, 不可追論. 傳曰, 旣酌情狀, 議於大臣而論定, 今不可改也."

<표 5> 영돈녕이상의 收議 내용

년도 / 내용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공사			1		1	2	1	1	1	3	1			2	3	16
국방		4	14	9	5	3	11	2	4	4	11	17	9	8	4	105
군사		2				1	2	6	8	3	1	8	3	12	4	50
논상			1	1	2	1		4		1	3	5	4	1	4	27
농정		1		1		3		2								7
법제			3		2	1		2	1	3	2	1		3	2	20
불교										1			3			4
사법	2	5	32	16	25	20	11	40	37	43	37	22	18	35	31	374
상소	1	1		1				2	2		1	1	1		1	11
왕실		1	1						1		2	1	1	1		8
외교		5	25	41	19	16	2	20	3	3	7	4	14	21	19	199
윤리	1	2	8	3	3	2	1	2	2	2	1		1	2		30
의례		1	7	19	13	9	1	3	12	5	8	4	5	4	3	94
인사	1	6	9	6	9	16	2	2	12	11	23	16	25	24	21	183
재이						1					2					3
재정		1	2	2	6	4	2	5	2	3	3			4		34
조세					1	1		1	3		1				2	10
진휼					1				1		1				1	4
풍속			3			1	1		2	2						9
행정		1		2	9	10		6	5	7	6	1	1	2	1	52
합계	5	30	108	101	96	91	34	98	96	91	110	82	85	119	96	1,242

*전거 : 《成宗實錄》

위의 〈표 5〉는 영돈녕이상의 구체적인 收議내용을 보여주는 것으로, 영돈녕이상은 국정전반에 걸쳐 광범한 사안에 대해 의논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사법 · 외교 · 인사 · 국방 · 의례에 관한 빈도가 높았는데 이러한 사안들은 정국운영의 핵심을 담당하는 부분이었다. 이 중 사법과 외교는 영돈녕이상이 가장 빈번하게 논의하였던 영역이었다. 사법의 경우 형률적용과 관련된 사안이 주를 이루었는데 영돈녕이상이 收議하였던 사안들은 사형과 같은 중죄와 관련된 것들이었다. 외교의 경우 明 · 日本 · 野人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사법과 외교의 영역에서는 古制와 과거의 시행에 비추어 숙고해서 결정해야 했기 때문에 연륜있는 대신들의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을 것이다. 그

밖에 이 시기 북방정벌이나 兀良哈 · 兀狄哈 등의 北邊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국방과 군사관련 사안들도 빈번하게 收議되었다. 영돈녕이상의 구성원 중 이극배와 허종은 병조에 오래 재직하면서 군사관련 업무에 전문화된 인물들이었고 실제 收議에서도 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인사사안의 빈도가 많은 것은 당시 대간들에 의해 인사 관련 발언이 증가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따라 영돈녕이상의 심의가 늘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2)領經筵事

영돈녕이상의 또 다른 주요업무는 영경연사로 경연을 주재하는 것이었다. 원상제 폐지직후 성종은 기존 원상들에게 영경연사직을 계속해서 맡을 것을 종용하였고, 성종친정 초기 영경연사직은 曾經정승 · 諸정승 등으로 불리던 시 · 원임정승들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영경연사직은 영돈녕이상에게로 그대로 이어졌고 대간들의 탄핵을 받으면서도 영경연사직을 유지하였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한명회 · 윤필상 · 윤호와 같은 인물들이었는데, 이들은 시임정승에서 체임되기는 하였지만 부원군으로서 영경연사직은 유지하면서 꾸준히 정국에 참여하였다.[121]

성종대 경연은 經書나 史書를 강하고 나서 국정사안을 논의하였는데, 먼저 특정 경연관이 발의를 하면 성종과 발의자가 논의하고, 이에 대해 다시 여러 경연관들에게 의견을 묻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성종친정기 대간들은 경연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이에 대해 성종은 경연관들과 논의하고 마지막 단계로 영경연사들에게 물어보아 최종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나서도 결론을 낼 수 없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영돈녕이상으로 대표되는 大臣收議로 이어지게 되었다.

> 지금 經筵과 朝會에서 일을 계달할 때 臺諫은 법에 의거하여 일은 논하고 인물을 탄핵하면, 전하께서는 좌우를 돌아보고 물어 지극히 마땅한 의논을 듣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혹 양단(兩端)을 확정짓지 못하고 화합되기를 관망하기도 하고, 혹 마음으로

121)《成宗實錄》권13, 2년 12월 9일 丙子條.

는 그 그름을 알면서도 생각한 바를 모호하게 하여 발설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는 그 말을 막고 부당하게 미봉책을 쓰기도 합니다. 무릇 중임의 대신으로 임금을 보필할 직임을 생각하지 않고, 和光同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아첨하고자 하니 이는 신 등이 마음 아파하던 것입니다.[122]

위의 기사는 弘文館 副提學 成俔의 상소로 성현은 경연에 참가하였던 대신들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현은 경연에 참가하는 대신들이 눈치만보고 의견을 제대로 개진하지 않고, 의견을 낸다하더라도 적절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세상에 아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명회 등의 영경연사를 맡았던 대신들은 본인들의 체직을 요구하지만 성종은 윤허하지 않았다.[123] 성종친정 초기 영경연사 직을 맡은 대신들은 지속적으로 사망하여 5명밖에 남지 않았고, 그 결과 2인씩 윤대로 경연에 참여하는 것조차 힘들어져 1인씩 윤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124] 이처럼 참여인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연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수의나 비공식적인 방법을 선호하였던 것이다. 가령 한명회의 경우 경연이 끝나고 성종과 따로 의견을 주고받고 있었다.[125]

그러나 이러한 비공식적인 접촉은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성종은 영돈녕이상으로 기존 소수 대신집단을 개편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영경연사를 전담하게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영경연사는 삼정승이 맡도록 되어있었음에도 영돈녕이상을 임명하였던 것이다.[126] 영돈녕이상 중 노사신 · 이극배 · 윤호는 삼정승을 역임하지 않은 인물들이었지만, 이들은 영경연사로 경연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 시기 성종은 이미 대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었고, 《經國大典》의 經年法을 근거로 인사에 문제제기를 하였던 대간에 대해 '쓸 만한 사람의 인

122) 《成宗實錄》 권98, 9년 11월 30일 丁亥條, "今經筵朝啓之際, 臺諫執法論事, 駁覈人物, 殿下顧問左右, 欲聞至論, 或依違兩端觀望希合, 或心知其非而含糊不發, 或阻格其言而曲爲彌縫. 夫以柱石大臣, 不思輔弼之任, 和光同塵欲以取媚於人, 此臣等之所嘗痛心者也。
123) 《成宗實錄》 권99, 9년 12월 6일 癸巳條.
124) 《成宗實錄》 권93, 9년 6월 5일 乙未條.
125) 《成宗實錄》 권82, 8년 7월 22일 丙子條. "比長曰, 諫、史官, 俱侍經筵, 人君之事, 大臣之言, 臺諫爭之於前, 史官書之於後. 今之大臣, 於臺諫・史官俱出之後, 獨留啓事, 其言之是非, 孰書之而孰論之也. 上曰, 誰也. 比長曰, 韓明澮是也."
126) 《經國大典》, 〈吏典〉, 經筵.

사에 있어 어찌 법에 구애를 받겠는가?'라고 하며 《經國大典》의 조항마저 배척하고 있었다.[127] 이처럼 성종은《經國大典》의 조항에 위배되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인사를 단행한다. 영돈녕이상의 영경연사 임명 역시 이러한 예로, 이는 부족한 영경연사 인원의 충원과 함께 대간의 견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 17년에는 종2품 이상의 宰相들 중 2인을 특진관으로 임명하여 경연에 참여시킨다.[128] 특진관은 다수의 인원이 뽑혀 특정 세력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윤번으로 입시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종2품 이상의 대신들 중에서 선별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 이 무렵 성종은 송영의 대간임명과정에서 대간들과 지루한 싸움을 계속하면서 대간들이 본인을 어리석게 여기고 모욕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129] 이러한 대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경연에서 대간들을 제어하기 위해 대신들을 기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신 · 이극배 · 홍응과 같은 영돈녕이상 구성원들은 실무경험이 풍부했던 관료로 경연에서도 활발하게 참여하였지만 대간만큼 적극적으로 사안을 제시하여 토론을 만들어내지는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경연사직을 늘리기에는 영돈녕이상의 구성원이 한정적이었고, 다수의 대신들이 경연에 참가하게 하는 방식을 택하여, 경연에서 대간과 대신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진관의 구성원은 처음 문신재상을 임명한 것에서 한명회의 건의로 武臣도 임명하였는데, 윤필상 · 홍응 · 이극배로 하여금 무신특진관의 의망을 맡겨 24인을 뽑게 하였다.[130] 이와 같이 특진관의 임명에도 영돈녕이상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었던 것이다.

3)兼판서

127)《成宗實錄》권98, 9년 11월 8일 乙丑條.
128)《成宗實錄》권191, 17년 5월 7일 辛亥條.
129)《成宗實錄》권156, 14년 7월 24일 戊辰條.
130)《成宗實錄》권191, 17년 5월 28일 壬申條; 《成宗實錄》권191, 17년 5월 29일 癸酉條.

겸판서제도는 성종친정 이전부터 원상과 외척대신들이 독점하면서, 이들이 6조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였다.[131] 친정 이전시기 겸판서를 역임했던 인물들은 원상을 제외하면 한계미 · 노사신 · 윤필상이 있는데, 이들은 중 한계미는 성종 2년에 사망하였고 노사신 · 윤필상은 영돈녕이상으로 활약하였다. 영돈녕이상의 일부 대신들은 친정 이전부터 이미 겸판서를 역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다.

성종친정 초기 겸판서제도는 시행되지 않았는데 영돈녕이상이 등장하면서 다시 겸판서제가 시행되었다. 성종친정기 영돈녕이상 구성원 중 겸판서에 임명된 인물은 노사신과 이극배였다. 이들의 특징은 원상출신이 아니었고 대간 · 6조 판서직을 두루 역임하는 등 실무경험이 많은 인물들이었다는 것이다. 이극배는 賑恤使의 폐단으로 인해 兼戶曹判書로 임명되어 종자곡 수송과 구휼을 담당하였다. 이후 이극배의 겸호조판서를 노사신이 대신하게 되었고, 이극배는 군적조사를 목적으로 겸병조판서에 임명된다. 이 시기 겸판서의 역할은 원상제 하에서 시행되었던 것과 차이가 있었다.

> 兵曹兼判書 이극배가 병오년 軍籍을 바치고 아뢰길, "… 청컨대 군적이 이미 끝났으니 臣의 겸판서 직을 면하고자 합니다."하였다.[132]

원상제 하에서의 겸판서제도는 원상이나 외척대신들이 6조에 머무르면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었던 반면, 영돈녕이상의 겸판서 역임은 특수한 업무에 맞춰 임명되고 임무가 끝나면 본래의 임무인 收議대신과 영경연사로 돌아가 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겸판서로 재직하면서 특수한 목적에 관련된 업무만을 행한 것은 아니었고, 본인이 속한 6조의 관서업무도 판서와 함께 처리하였다.[133] 이는 영돈녕이상 중 실무적 능력이 뛰어났던 인물들이 임명되면서 나타난 변화였다.

---

131) 金宇基, 앞 논문, 194~195쪽.
132)《成宗實錄》권239, 21년 4월 5일 丁亥條, "兼兵曹判書李克培, 進丙午年軍籍, 仍啓曰 … 軍籍已畢, 請免臣兼判書. 從之."
133)《成宗實錄》권137, 13년 1월 27일 丙申條.

3. 성종대 권력구조와 領敦寧以上 優容

성종 즉위를 전후로 국왕의 권력은 대신들과의 역학관계에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세조대 정국운영은 癸酉靖難을 도운 공신세력들을 중추로, 세조와 이들 대신들의 폐쇄적이고 파행적인 형태로 행해졌다. 이러한 세조와 소수의 대신세력으로의 권력집중은 나머지 관료들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켰다. 대표적으로 대간과 같은 언론기관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세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예종이 요절하면서 어린 성종이 즉위하게 되고, 정희왕후와 세조대 공신집단인 원상들이 정국운영을 주도하였다. 성종 즉위초의 권력구조는 이전시기에 비해 국왕의 역할이 현저히 저하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원상들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세조대 왕권강화를 위해 폐지되었던 제도들이 복구되고, 파행적으로 운영되었던 제도들이 사라져갔다. 전자의 예로 돈녕부의 복설, 경연의 재개를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 종친부시의 금지를 들 수 있다. 특히 성종의 국왕교육을 위한 경연제도의 복구는 다양한 관료들의 정치참여로 이어졌고, 그 중에서도 이전시기 위축되어 있던 대간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성종은 경연을 통해 유교적 성군을 목표로 철저한 교육을 받으면서, 하급 관료들의 간언까지도 귀기울이려 노력하였다. 이는 고대 중국의 성군들이 보였던 납간의 태도를 본받고자 했던 것으로, 경연을 통해 철저한 유교교육을 받은 성종치세에 있어, 간언을 하는 직임인 대간의 성장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간언의 직임 자체가 왕을 비롯한 다른 신료들과의 긴장관계를 노정하고 있었다.[134]

성종이 장성하면서 친정이 시작되고 다시 국왕의 권력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성종의 친정을 전후로 하여 원상들이 대부분 사망하면서 세조대 책봉되었던 공신위주의 정국운영구조가 와해되고 있었다. 원상들은 어린 성종을 보위하면서 왕권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친정이 시작되고 권신화된 원상들은 성종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로서 이중성을 가

134) 송웅섭, 2011 앞 논문, 103~105쪽; 김범, 2005 앞 논문, 35쪽.

지고 있었다.[135] 어린나이로 왕위에 올랐던 성종은 왕권이 미약했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원상의 사망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고, 대간언론의 활동 역시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는 정치적 지형으로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간은 대신을 탄핵하거나 적극적으로 간언을 하면서 정국운영의 전반에 간여하기 시작하였고, 왕의 권력 행사에 제약을 가하면서 성종과 대간은 갈등하기 시작하였다. 성종 즉위초 대간의 자급을 올려주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을 만큼 대간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지만,[136] 성종 9년 대간 붕당조성 사건의 발각 이후 성종과 대간의 갈등은 성종 치세 말년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종은 영돈녕이상집단으로 소수 대신집단을 재편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국가중대사를 논의하게 하여 증가하는 대간언론에 대처하고 있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돈녕이상은 성종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좌리공신이자 외척이었데, 이는 세조가 종친과 본인의 친공신세력 위주로 정국을 운영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과 유사한 면을 보인다. 다만 성종대의 정치구조에서 도학적인 요소가 정치활동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되어갔기 때문에, 세조대처럼 대간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수는 없었다.

성종은 영돈녕이상에 대해 '모든 국가의 중대사는 경들과 의논한다.'라고 격려하면서 국가의 元老로 우대하였다.[137] 또 명나라 사행의 頒賜品이나 철마다 필요한 물품을 하사하여 이들을 진작시키고, 이들에 대한 대간들의 각종탄핵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정치에 참여시켰다. 이들은 원상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소수 대신집단의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외척으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종대 이들의 우대는 곧 외척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이 시기 영돈녕이상의 家格은 자연스레 높아졌고, 서로 가격이 비슷하였기 때문에 영돈녕이상 내부에서 혼인을 하거나 왕실과 통혼하여 권력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는 성종 친정기 영돈녕이상 집단과 관련된 친인척들이 의정부 · 6조 · 승정원에

135) 송웅섭, 2011 앞 논문, 130쪽.
136)《成宗實錄》권10, 2년 6월 18일 己未條.
137)《成宗實錄》권137, 22년 12월 16일 戊午條.

상당히 높은 빈도로 임용되고 있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들은 문·무과를 통해 관료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었지만, 돈녕부직을 거쳐 실직으로 진출하고 있었다.

> 이조에서 아뢰기를, "敦寧府 관원들 중 才器가 일을 감당할 만한 자는 응당 동반에 서용하는데, 혹 늙고 병들어서 맡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번 그 직임을 받고서 여러 해 동안 체임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마땅히 서용해야할 다른 至親들이 성상의 은택을 입지 못하니 未便합니다."하였다.[138]

위의 사료에서는 돈녕부 직을 통해 실직으로 진출하였던 외척들의 관직 임용 형태를 알 수 있는데, 영돈녕이상의 친족들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실직으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대간들은 돈녕부직을 통해 실직으로 나아가는 것을 탄핵하였다. 일례로 윤호의 아들인 尹湯老와 홍응의 손자 洪伯慶이 동시에 탄핵을 받았다. 윤탕로는 돈녕부봉사로 관직에 나아갔는데 覆試에 합격한 이후 수령을 지내지 않고 4품으로 승진하였고, 洪伯慶은 돈녕부주부로 있으면서 禮賓寺判官으로 임명되자 대간들이 사사로운 은혜를 베푼다고 탄핵하였다. 성종은 이에 대해 '왕비의 친척은 아무리 어질고 능력이 있더라도 기용하지 말아야겠느냐?'라고 하면서 대간의 말을 물리쳤다.[139]

대간의 척신기용 비판은 성종친정 시기 언제나 제기되어왔고, 이로 인해 성종과 대간의 갈등은 심화되어갔다. 성종대 척신들은 정희왕후의 수렴청정 시기부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고 돈녕부를 통해 우대받으며 관료로 진출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척신에 대해 성종 역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 가령 10여 명의 화적무리를 붙잡아서 취조한 결과 척신인 權聰의 종들이었는데, 외척이라는 이유로 용서하였다.[140] 대신들도 척신의

---

138)《成宗實錄》권238, 21년 3월 25일 戊午條. "吏曹啓, 敦寧府官員內, 才堪治事者, 應敍東班, 其或老病, 不堪任事者, 一受其職, 多年不遞, 其他應敍至親, 未蒙恩澤, 未便."
139)《成宗實錄》권236, 21년 1월 12일 乙丑條. "上曰, 然則椒房之親, 雖賢能, 亦不用乎, 予之所以欲加湯老資者, 非敢私也, 以湯老年少有才也, 大抵武臣, 非徒事弓馬, 必踐歷諳練而後, 可任將帥, 予恐汝輩, 不知予意, 據法妄言, 故已議於大臣而授其職, 伯慶則體貌壯大, 年亦稍長, 可以任事, 禮賓, 乃事煩之地, 故除判官, 俾習其事耳, 爾何謂予施私恩乎,"
140)《成宗實錄》권66, 7년 4월 28일 乙丑條.

지위를 인정하면서 성종과 비슷한 시각으로 척신을 대하였지만 대간들은 척신에 대한 私情을 최대한 배제하려고 하였다. 安順王后의 동생인 韓懽의 간통죄 처벌을 놓고 이극배는 '척리의 가문이기 때문에 억지로 추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대간은 '척리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하였다.[141]

성종의 척신우대에 대한 대간의 비판논리는 '公과 私'를 구분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라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성종은 私에 근거하여 정치를 하고 대간은 公에 근거하여 간언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失政을 저지른 척신에 관한 것이라면, 성종 역시 특별한 반발 없이 윤허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부하거나 중죄의 경우 수용하였다. 그러나 성종이 행한 인사에 대해 척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대간의 논리는 정상적인 성종의 인사행위를 私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13세의 어린나이로 왕위에 올라 1일 3강과 야대까지 겸하여 철저한 유교교육을 받았던 성종에게 있어 본인을 '사적 정치행위를 하는 군주'로 규정하는 대간들에 대해 상당한 분노를 느꼈다. 특히 성종치세 말엽인 20 ~ 25년 사이 척신들에 대한 대간의 비판은 그 빈도가 강해지고 수위 역시 높아지고 있었다.[142]

이 시기 사헌부에서는 천변재이에 대한 장문의 상소를 올렸는데, 이러한 천변재이의 원인으로 외척을 비롯한 각종 관료들의 옳지 못한 인사를 들고 있다. 이 상소에서 성종에 대한 간언은 상당히 공격적이었는데, '임금의 특별한 은혜가 마구 베풀어져서 궁중 여인의 방에서 은혜가 義를 가리고 戚里의 집안에서 법이 公을 폐한다.', '善을 좋아하는 마음이 진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따르는 도량이 넓지 못하여 公論을 폐하더라도 사사로운 은혜를 부당하게 베푼다.'고 거센 비난을 퍼부었다.[143] 이와 함께 대간의 척신탄핵들 중 성사되지 않았던 사례를 일일이 열거하면

141)《成宗實錄》권84, 8년 9월 17일 辛巳條, "李克培啓曰, 此乃戚里家門事, 不可强推. 自平曰, 若以戚里不問, 則後日戚里之人恣行不忌矣. 克培自知其非, 默然."
142) 韓春順, 2006〈朝鮮 成宗의 王權과 勳戚支配體制〉《慶熙史學》24, 慶熙史學會, 121~122쪽, 참조.
143)《成宗實錄》권283, 24년 10월 23일, 甲申條. "殿下以親親之篤, 寵待外戚, 橫施異恩, 閨闥之內, 恩或掩義, 戚里之家, 法或廢公, 因緣宮禁, 恣爲豪縱. … 好善之心有未誠, 從人之量有未弘, 寧廢公論而曲施私恩, 拒諫之失, 至此已甚."

서 또다시 탄핵하였다. 여기서 비난의 대상이 된 인물들은 윤호의 동생인 尹坦과 아들인 尹湯老 · 尹殷老, 성종의 부마 任光載, 성종의 외사촌 韓健, 정희왕후의 조카 李鐵堅, 尹弼商과 그의 아들 尹俶, 盧思愼의 아들 盧公裕가 열거되었다.[144] 이들은 성종의 외척들이자 영돈녕이상인 윤호 · 윤필상 · 노사신등과 연관된 인물들이었다. 위의 상소에서 대간들은, 이들에 대해 '野鄙', '貪墨', '驕慢', '妄靈'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잘못된 인사로 지적하였다.

실제 다른 많은 척신들이 관료로 활약하고 있었는데 유독 이들에 대해서만 탄핵이 행해지고 있었던 점은 이들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지만, 성종이 탄핵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해주었던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간의 공박을 받았던 관료들은 으레 避嫌을 요구하였는데, 탄핵을 받았던 척신들의 피혐에 대해서 성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윤숙의 피혐 요청에 대해서는 "스스로 공론이 있으니 피혐하지 말라."라고하며 공론을 자임하면서까지 이들을 보호하였다.[145] 한건의 피혐요청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척리 중에 크게 어진 이가 아니면 대간들이 예사로 반드시 논핵하는데, 경은 다만 몸을 닦을 뿐이지 어찌하여 번거롭게 사피하는가?"라고 하고 있다.[146] 성종은 척신에 대한 대간의 탄핵은 공론이 아니며, 옳지 못한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이 시기 대표적인 대간의 척신탄핵은 영돈녕부사 윤호와 관련된 것이었다. 윤호의 우의정임명에 대해 대간들은 맹렬한 비판을 가하였는데, 대간의 탄핵과 윤호 본인의 체직요구가 6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끝에 체직되었다.[147] 그런데 윤호의 후임으로 세자의 장인인 신승선을 임명하였다. 신승선의 우의정임명은 영돈녕이상 집단의 외척적 요소를 보여주는 인사로, 이는 병세가 깊어지고 있던 성종이 세자의 보위를 위해 특별히

144)《成宗實錄》권283, 24년 10월 23일 甲申條.
145)《成宗實錄》권283, 24년 10월 23일 甲申條, "左副承旨尹俶啓曰. 臣亦自知不稱其職, 今憲府之言, 正中臣病, 請辭. 傳曰. 自有公論, 其勿避."
146)《成宗實錄》권283, 24년 10월 25일 丙戌條, "工曹參判韓健來啓曰, 臣過蒙上恩, 旣歷承旨, 又入六曹, 臺諫之論, 實中臣病. 請遞臣職, 以快國論. 傳曰, 自古戚里之人, 若非大賢, 則臺諫例必論駁. 卿但當修身而已, 何煩辭避."
147)《成宗實錄》권295, 25년 10월 20일 乙亥條.

임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성종은 훙서하기 이틀 전 영돈녕이상을 불러 병세를 보이고, 임종 직전 이극배 등을 불러 '정승들은 야직을 하며 승정원에 머물면서 세자와 일을 의논하라'고 지시하였다.[148] 성종은 세자였던 연산군에게도 본인이 처음 즉위하던 때에 院相이 있었으니 정승들과 함께 승정원에서 국사를 논의하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연산군 즉위초 영돈녕이상은 원상으로 임명되었다.[149] 성종즉위초 세조의 근신들이 성종을 보필하였던 것처럼, 연산군 즉위초 성종의 근신이자 외척집단이었던 영돈녕이상에게로 그 역할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연산군은 다른 대신들과 공사를 논의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원상들 위주로 계달된 내용을 의논하였고, 영돈녕이상 출신 원상들의 권력은 높아져 갔다.[150] 그러나 이들 역시 노성한 대신들이었기 때문에 연이어 사망하였다. 그럼에도 영돈녕이상과 혼맥으로 연결된 임사홍이나 국구인 신승선의 친인척들은 연산군대의 정국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외척대신의 정치참여 증대는 성종친정기 영돈녕이상집단의 성립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었다. 성종즉위초 수렴청정으로 말미암아 외척세력들의 영향력은 꾸준히 증대되었고, 성종 역시 대간들의 끊임없는 탄핵속에서 영돈녕이상집단을 비롯한 외척들을 보호하였다. 성종은 임종 직전 영돈녕이상에게 세자의 보위를 부탁하였고 이러한 외척대신들의 영향력은 증대되었다. 외척의 우용은 중종대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었고, 중종 이후 발호하였던 외척대신들의 가계 역시 영돈녕이상집단에 근원하였던 점은 이들이 인종 · 명종시기 척신 정치의 단초가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

148)《成宗實錄》권297, 25년 12월 24일 己卯條. "命召領議政李克培等, 傳曰, 政丞等, 雖夜勿退去, 留宿政院與世子議事."
149)《燕山君日記》권1, 즉위년 12월 29일 甲申條.
150)《燕山君日記》권3, 1년 2월 5일 己未條.

맺음말

본 연구는 성종대 정국운영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자, 성종친정기에 등장한 領敦寧以上집단을 주제로 하여 이들의 등장배경에 대해 알아보고 그 구성원과 정치활동을 분석하였다.

영돈녕이상은 소수의 대신집단으로서 성종친정 이전 院相制로 부터 깊은 영향을 받았다. 이 시기 대신은 2품 이상의 관원을 아울러 칭하는 용어였는데, 원상과 영돈녕이상은 그 중에서도 공신이자 1품 이상의 노성대신들로 구성되었다. 원상들은 승정원에 좌정하여 모든 업무에 관여하였고 收議 참여 · 領經筵事 독점 · 兼判書 역임을 통해 幼主인 성종을 보좌하며 정국운영을 주도하였다. 원상이 세워놓은 이러한 정치적 역할은 그대로 영돈녕이상으로 이어지면서 소수 대신집단의 정치참여가 지속되었다.

성종 즉위초 貞熹王后의 垂簾聽政으로 말미암아 정희왕후를 비롯한 외척세력들의 정치참여가 증가한다. 외척들은 법적으로 사환이 허용되었고 돈녕부를 통해 예우를 받을 수 있었다. 세조대 단종의 친인척세력 제어를 위해 폐지되었던 돈녕부는 성종 즉위초 復設되었는데 이 시기 돈녕부의 관원들은 대부분 외척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돈녕부직을 겸직하거나 돈녕부직을 통해 실직으로 진출할 수 있었다. 돈녕부의 체제는 《經國大典》의 완성으로 정비되는데 돈녕부의 정1품 관직인 領敦寧府事를 國舅로 하는 조항이 추가되면서 왕비가문의 정치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영돈녕이상집단은 대부분이 외척으로 구성되어있었다는 점에서 성종 즉위초 외척의 정치참여 증대가 영돈녕이상집단 구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고, 이후 영돈녕이상 집단의 친인척 역시 돈녕부를 통해 직사로 나아가면서 정치에 참여하였다.

한편 성종대는 세조시기 폐지되었던 각종 제도들이 복구되었는데, 經筵 역시 그 중 하나였고 대간은 경연을 통해 발언횟수를 늘리며 정치적 역량을 키워나갔다. 성종 역시 유교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기 때문에 納諫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대간의 정치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성종친정 초기 戊戌之獄으로 일컬어지는 대간 붕당조성사건은 성종으로 하여금 공론소재

처로서의 대간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制度的 · 道學的으로 성장하였던 대간의 언론활동은 끊임없이 지속되었고 성종은 이에 대해 견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러나 대간을 견제하면서 성종을 보위할 수 있는 원상출신 대신들은 고령으로 인해 대부분 사망하였다.

성종은 대간세력 자체를 줄이거나 새로운 정치집단을 구성해야만 했다. 이러한 성종의 정치적 모색은 영돈녕이상이라는 새로운 소수의 대신집단을 구성하는 것이었다. 이는 소수 대신집단과 왕권보위라는 원상의 성격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지만, 영돈녕이상이 구성될 당시의 정치적 지형은 원상제의 그것과 판이하게 달랐다. 성종대는 정국운영에 있어 사적영역이 배제되고 공적영역이 확대로 나아가고 있었고, 도학을 기반으로 한 공론의 소재가 정치행위의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지형 위에서 공론의 소재처로 자임한 대간은 왕권강화에 저해될 만큼 성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국대전》에 존재하지 않는 원상과 같은 제도를 통해 친왕세력을 구성 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관료집단 내에서 왕권보위집단을 구성하려하였고, 실직제수가 금지되었던 종친부를 제외한 정1품 관료집단인 영돈녕이상 집단이 구성되었던 것이다.

영돈녕이상은 원상이 세조대의 유력공신이었던 것처럼 성종을 보필하기 위해 책봉되었던 좌리공신출신이자 외척이라는 특성을 가진 집단이었다. 이들은 府院君과 三政丞 · 領中樞府事 · 領敦寧府事로 구성된 정1품의 고위관료집단이었는데, 집단 내부에서 부원군과 실직을 오가며 집단을 유지하였고 외부인사를 배제하는 방법으로 집단을 유지하였다.

영돈녕이상집단의 정치참여 방식은 원상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원상은 왕의 死後 嗣王을 도와 승정원에 좌정하면서 정무를 함께 보았는데, 영돈녕이상은 이러한 특수한 원상의 역할을 제외하고, 收議를 통한 중대사 논의 · 영경연사로서 경연주재 · 겸판서로서 6조판서직 겸무라는 원상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했다. 조선초기 收議의 형태가 의정부와 육조를 중심으로 행해졌다면, 성종대 收議는 원상 · 영돈녕이상과 같은 왕의 근신이면서 노성한 공신들로 구성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영경연사직 역시 《經國大典》에는 삼정승이 맡도록 한정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원상과 영돈녕이상은 영경연사직을 맡아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성종대 대간의 언론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언의 강도 역시 강해지고 있었는데 이는 경연을 통해 주로 행해졌다. 경연에서 대간이 특정사안에 대해 발언을 하면 성종은 이에 대해 영경연사들과 논의하는 상황이 많았고, 여기서 해결되지 않는 사안들은 다시 영돈녕이상 收議로 이어졌다. 이러한 영돈녕이상 收議는 많은 중대사를 결정하기도 하였지만 대간의 공박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로 이용했던 점에서 성종 보위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기 대간들의 대신탄핵이 활발해졌는데 영돈녕이상에 대한 탄핵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윤호와 윤필상은 시임정승에서 체임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그 역할이 변하는 것은 아니었고, 이들은 여전히 수의에 참여하고 영경연사직을 유지하면서 기존 영돈녕이상의 정치활동에 참여했다.

성종은 영돈녕이상을 優容하였고, 이들은 외척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우대는 곧 외척의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성종대 외척들은 돈녕부를 통해 실직으로 진출하였고 영돈녕이상 자손들 역시 돈녕부를 통해 실직으로 나아갔다. 이 시기 대간들은 과거를 통해 관직으로 진출하지 않고 외척이라는 지위를 통해 능력보다 높은 직위에 오르거나 인격적으로 부적합한 외척들을 맹렬하게 탄핵하였다. 특히 성종 말엽인 20~25년 사이 외척에 대한 탄핵은 높은 빈도와 강도를 보인다. 대간들은 천변재이의 원인을 부당한 외척인사로 돌렸고 영돈녕이상의 친·인척들은 끊임없는 탄핵에 시달려야했다. 대간들은 외척을 탄핵하면서 인사결정권자인 성종에 대해 私情에 기인한 인사라고 비난하였다. 그러나 성종은 이러한 대간의 공박에 대해 공론을 자임하면서 외척들을 보호하였다.

성종은 임종직전 영돈녕이상을 불러 원상으로서 세자를 보필할 것을 부탁한다. 이는 세조가 예종을 보위하고자 근신들에게 부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공신이자 외척집단인 영돈녕이상에게 세자의 보위집단이 되어 줄 것을 당부한 것이다. 이들은 고령의 대신들이었기 때문에 연산군 즉위를 전후로 하여 많은 인물들이 사망하였다. 그러나 영돈녕이상과 관련된 친인척들은 꾸준히 정치에 참여하면서 연산군을 보필하였다. 愼承善과 그의 아들 愼守勤, 영돈녕이상과 중첩적인 혼인관계를 맺은 任士洪과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외척대신의 정치참여는 중종 이후로도 이어지고 있었고 중종 이후 발호하였던 외척대신들의 가계 역시 영돈녕이상에 근원을 두고 있는 점에서 인종 · 명종시기 척신 정치의 단초로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선행 연구들에서 크게 주목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이해되어 왔던 성종친정기 대신들의 동향에 주목하였다. 그 중에서 영돈녕이상이라는 훈척집단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소수 대신정치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성종을 보좌하며 국정운영의 중추를 담당했던 대신집단의 동향을 파악하고 성종말엽 외척들의 정치참여가 증대되었던 사실을 밝혔다. 아울러 이른 시기부터 성종과 대간의 갈등은 존재했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보위집단으로 영돈녕이상이 위치하고 있었다. 다만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성종대와 영돈녕이상의 정치활동에 한정한 것으로 인해 성종대 전후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특히 성종이 연산군의 후견세력으로 이들을 지목했고 연산군대와 그 이후 중앙정계에서 활동하였던 유력 척신의 가계가 영돈녕이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영돈녕이상의 정치활동과 이후 이어지는 흐름을 파악함으로써 조선전기 척신들의 정치참여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추후의 과제로 돌리겠다.

참고 문헌

一. 사료

1.연대기

《太宗實錄》, 《世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2.법전

《經國大典》

二. 연구논저

1. 단행본

김돈, 2009《조선중기 정치사 연구》, 국학자료원

김범, 2007《사화와 반정의 시대》, 역사비평사

金宇基, 2001《朝鮮中期 戚臣政治硏究》, 集文堂

李秉烋, 1984《朝鮮前期 畿湖士林派硏究》 一潮閣

_____, 1999《朝鮮前期 士林派의 現實認識과 對應》, 一潮閣

이희환, 2015《조선정치사》, 혜안

李樹健, 1979《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出版部

李泰鎭, 1985《朝鮮後期의 軍營制 變遷》, 韓國硏究院

_____, 1986《朝鮮社會史硏究》, 지식산업사

_____, 1989《朝鮮儒敎社會史論》 지식산업사

鄭杜熙, 1983《朝鮮初期 政治支配勢力硏究》, 一潮閣

_____, 1994《朝鮮時代의 臺諫硏究》, 一潮閣

崔承熙, 1989《朝鮮初期 言官·言論硏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 2004《朝鮮初期 言論史硏究》, 지식산업사

崔異敦, 1994《朝鮮中期 士林政治構造硏究》, 一潮閣

崔楨鏞, 2000《朝鮮朝 世祖의 國政運營》, 신서원

2. 논문
權延雄, 1982〈朝鮮 成宗朝의 經筵〉《韓國文化의 諸問題》, 時事英語社
金甲周, 1973〈院相制의 成立과 機能〉《東國史學》12, 東國史學會
金範, 1999〈조선전기 院相 家門의 변천과 그 의미 - 勳舊勢力 파악의 한 사례연구 -〉《史叢》49, 고대사학회
____, 2003〈조선전기 '훈구 · 사림세력' 연구의 재검토〉《韓國史學報》15, 고려사학회
____, 2005〈조선전기의 왕권과 정국운영: 성종·연산군·중종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 2006〈朝鮮王朝實錄에 나타난 '勳舊'의 用例와 그 분석〉《東方學志》179, 延世大學校 國學硏究院.
____, 2011〈조선시대 사림세력 형성의 역사적 배경〉《국학연구》19, 한국국학진흥원.
金成俊, 1962〈太宗의 外戚除去에 對하여 - 閔氏兄弟의 獄〉《歷史學報》17·18, 歷史學會
김순남, 2016〈조선 세조대 말엽의 정치적 추이〉《역사와 실학》60, 역사실학회
金宇基, 2001〈朝鮮 成宗代 貞熹王后의 垂簾聽政〉《朝鮮史硏究》10, 朝鮮史硏究會
金泰永, 1994〈朝鮮초기 世祖王權의 專制性에 대한 一考察〉《韓國史硏究》87, 韓國史硏究會
南智大, 1985〈朝鮮 成宗代의 臺諫 言論〉《韓國史論》12,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_____, 1994〈조선초기 禮遇衙門의 성립과 정비〉《東洋學》24, 檀國大學校 東洋學硏究所
문숙자, 2011〈조선 초기 상신 이극배의 생애와 활동〉《조선 중기 훈구·사림정치와 광주이씨》, 지식산업사
박진, 2004〈朝鮮初期 敦寧府의 成立〉《韓國史學報〉18, 고려사학회

申明鎬, 1999〈朝鮮初期 王室 編制에 관한 硏究〉, 韓國精神文化硏究院 박사학위 논문
宋雄燮, 2001〈中宗代 己卯士林의 構成과 出身背景〉《韓國史論》45,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_____, 2011〈조선 전기 公論政治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 2014〈성종의 즉위와 국정운영방식의 변화〉《史學志》49, 단국사학회
_____, 2017〈고려 말~조선 전기 '정치 세력의 이해'다시 보기〉 《역사비평》120, 역사비평사
申奭鎬, 1944〈朝鮮 成宗時代의 新舊對立〉《申奭鎬全集》上, 신서원.
윤훈표, 2013〈15세기 말엽부터 16세기 중엽까지 경연의 변모와 그 의미〉《역사와 실학》51, 역사실학회,
李東熙, 1994〈朝鮮初期 院相의 設置와 그 性格〉《全北史學》16, 全北史學會
李泰鎭, 1987〈黨派性論 批判〉《한국사시민강좌》1, 일조각
정두희, 2000〈朝鮮前期史 硏究의 爭點〉《西江人文論叢》13, 서강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崔承熙, 1998〈世祖代 國政運營體制〉《朝鮮時代史學報》5, 朝鮮時代史學會
_____, 2001〈成宗朝의 國政運營體制와 王權〉《朝鮮史硏究》10, 朝鮮史硏究會
崔異敦, 2012〈조선초기 왕실 친족의 신분적 성격 - 관직 진출을 중심으로 -〉 《震檀學報》117, 震檀學會
韓春順, 2002〈成宗 초기 貞熹王后(세조비)의 政治 聽斷과 勳戚政治〉《朝鮮時代史學報》22, 朝鮮時代史學會.
_____, 2003〈朝鮮 成宗의 六曹直啓制 運用과 承政院〉《韓國史硏究》122, 韓國史硏究會
_____, 2006〈朝鮮 成宗의 王權과 勳戚支配體制〉《慶熙史學》24, 慶熙史學會
韓忠熙, 1995〈朝鮮 世祖代(1455~1468) 宗親硏究〉《한국학논집》

22,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소
_____, 1998〈朝鮮 世祖代(1455~1468)의 內宗親에 대하여〉《慶北史學》21, 慶北史學會
_____, 2003〈양반관료국가의 성립 - 왕권의 재확립과 제도의 완성〉《한국사》22, 국사편찬위원회

Edward W. wager, 1980〈李組 士林問題에 관한 再檢討〉《全北史學》4, 全北史學會

【abstract】

The Organization and Political activity of Youngtonnyung-Isang in Seongjong's Reign of Joseon Dynasty

Kim, Won-Hyeok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situation During King Seongjong's reign(1469~1494), especially focusing on establishment and political activity of 'Youngtonnyung-Isang(領敦寧以上; the group having more than the chief of Tonnyungbu's official rank). The period of King Seongjong's reign has been considered the time in which Daegan(臺諫; Remonstration officers) politically grew up, As King Seongjong gave the preference to Daegan and checked the higher minister for reinforcing the sovereign authority in the period of his directly reign. However, in fact, conflicting with Daegan at that time, King Seongjong was not at feud with higher minister. Therefore there seems to be a need to analyze Political activities related to the higher minister who have overlooked in the meantime, to understand The management of the political situation of King Seongjong's period.

'The group having more than the chief of Tonnyungbu's official rank' that was called as "Youngtonnyung-Isang(領敦寧以上)" was a political core among the higher ministers in period of

his directly reign. Youngtonnyung-Isang was composed of the higher ministers, maintaining themselves exclusively through crossing over Buwongun(府院君; the first class vassal of merit) between the court office positions. This group had succeeded the roll of Wonsang(院相; vassal of merit was invested by King Sejo to assist his government operation), which means that the politics of the minority of higher minister was persisted.

The members of Youngtonnyung-Isang were mainly king's relatives in laws. It has been known that this phenomenon was influenced by regency of Queen grand mother(貞熹王后), because King Seongjong's was too young to reign. Meanwhile Tonnyungbu(敦寧府; A department for treatment of King's relatives in laws with respect) which had been abolished by King Sejo was reinstalled in this period. Though official of Tonnyungbu had no specific duties, The king's relatives in laws easily promoted to bureaucrat through changing their position to the official having duty. Since then, Queen's family have a higher political status as the clause which was the chief of Tonnyungbu(領敦寧府事) as Queen's father was inserted in 《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On the other hand Daegan had a chance to participate in politics through the Gyeong'yeon(經筵), and impeaching the higher ministers for Irregularities. Consequently they politically grew more than before. As having been educated on doctrine of Confucian, King Seongjong dealt with them with favor. However, King Seongjong began to conflict with Daegan due to the affair of Daegan's encouraging the factional strife(1478, 9th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Also Daegan's political activities, such as remonstrance, have limitied sovereign power since then. At that time, most of Wonsang who had protected King Seongjong's authority passed

away around 10th year of King Seongjong's reign. King Seongjong had to choose suppression about the Daegan's power or promotion of the new political group under those circumstances. King Seongjong selected the latter.

The means of the Youngtonnyung-Isang's political participation were the 'council of higher minister(收議)', 'holding a Gyeong'yeon as the first class official', 'undertaking the minister of Yukjo'. 'transmission to king about the discussion of a serious matter among themselves'. acting with the purpose of discussing important matter, council of higher minister also functioned as refutation toward Daegan. They also took part in the Gyeong'yeon, stating their views about issues or giving advice about Daegan's opinion. Besides they exert their influence to Yukjo as undertaking the minister of Yukjo.

Daegan also impeached Youngtonnyung-Isang's member, and making them oust as official. Although Youngtonnyung-Isang lost their official title, the roll of them was not change, such as participation in council of higher minister and Gyeong'yeon. In other words, King Seongjong gave proference to Youngtonnyung-Isang. On the other hand, King Seongjong's attitude toward Youngtonnyung-Isang was bounded to grow the king's relatives in laws, because almost all the members of Youngtonnyung-Isang were the king's relatives in laws. Daegan sharply criticized the personnel matters of the maternal relatives of king included Youngtonnyung-Isang. Especially Daegan fulminate official of the king's relatives in laws in the latter years of King Seongjong reign. Nevertheless King Seongjong protect his maternal relatives from the Daegan's criticism and even insisted that he had Gong-Lon(公論).

King Seongjong called Youngtonnyung-Isang in just before

his last moments, and assisted the price(燕山君) as Wonsang of prince. This was similar with the previous King's case like King Sejo. Though Youngtonnyung-Isang was so old that they were died in early YeonSan period, the people who related to Youngtonnyung-Isang played an active part in politics. Their political activities show the political coalition between King Seongjong and Youngtonnyung-Isang, meaning the king's maternal relatives officially entering into bureaucracy. In addition, Youngtonnyung-Isang had great influence on domination of King's relatives in laws at oncoming king's generation, in terms of the Youngtonnyung-Isang's descendants was being high class bureaucracy of king's maternal relatives in the period of king Injong reign and King myeongJoung reign.

Topics : The Group having more than the chief of Tonnyungbu's Official Rank(領敦寧以上), Tonnyungbu(敦寧府), King Seongjong (成宗), Wonsang(院相), Higher minister(大臣), Remonstration officer(臺諫), Council of Higher Minister(收議), King's relatives in laws(外戚), Gyeong'yeon(經筵)
Student Number: 2015-20069